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일반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025. 6. 18.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821호, 제2822호, 제2823호
- 다. 제출일자 : 2025. 5. 26.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A-B-C)	수납율%(B/A)
2024	10,713	10,713	16,684	10,948	191	5,544	65.6

- 세입예산현액은 107억 1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66억 8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9억 48백만원을 수납하고, 1억 91백만원은 정리보류하여 55억 4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65.6%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24	102,926	14,149	15,877	611(-611)	-	-	132,952	110,230	17,936	497	17,439	3	4,783(3.6%)

- 예산액 1,029억 2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1억 49백만원, 예비비 사용 158억 7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29억 52백만원으로, 이 중 82.9%인 1,102억 3천만원은 지출하고 13.5%인 179억 3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02%인 3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47억 8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사용

- 예산 변경 사용은 4건에 6억 11백만원으로

- 물순환 정책 활성화 2백만원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3억원

-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61백만원

-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2억 48백만원

○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은 1건에 159억원으로

-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59억원임.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4억 9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329억 52백만원 대비 0.4%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74억 3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329억 52백만원 대비 0.002%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7억 8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329억 52백만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4	132,952	4,783	3.6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 12억 5백만원
- 지출잔액 : 34억 69백만원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 87백만원
- 보조금 정산잔액 : 1천만원
- 예산 절감액 : 1천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4	30,875	30,875	23,144	23,144	-	-	100.0

- 예산현액 308억 75백만원 대비 74.96%인 231억 44백만원을 정수결정하여, 231억 44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지방채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145,129	42,476	-	111 (-111)	-	-	187,605	48,046	105,856	70,831	35,025	98	33,605 (17.9%)

- 예산액 1,451억 2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4억 7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76억 5백만원으로, 이 중 25.6%인 480억 46백만원은 지출하고 56.4%인 1,058억 5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9%인 336억 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1건에 1억 11백만원으로

-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708억 31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76억 5백만원 대비 37.8%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350억 2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7%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액은 9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5%임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36억 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876억 5백만원 대비 17.9%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4	187,605	33,605	17.9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 정산잔액 : 231억 93백만원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 100억 16백만원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4	32,101	32,258	31,866	31,866	-	-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322억 58백만원으로 318억 66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318억 66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32,101	157	-	-	-	-	32,258	30,292	70	-	70	875	1,021 (3.2%)

- 예산액 321억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2억 58백만원으로, 이 중 93.9%인 302억 92백만원은 지출하고 2.7%인 8억 75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0억 2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규모는 총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322억 58백만원 대비 0.4%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8억 75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22억 58백만원 대비 2.7%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0억 21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22억 58백만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4	32,258	1,021	3.2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억 55백만원
- 지출잔액 : 3억 9천만원
- 예비비 : 2억 75백만원

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상환	기타	다음 연도 이월 액
2024	92,124	-	15,601	-	3,291	73,231	-	-	92,124	-	92,124	-	-	-	-
2023	73,231	-	20,000	-	2,938	50,293	-	-	73,231	-	73,231	-	-	-	-
2022	50,293	-	49,646	-	647	-	-	-	50,293	-	50,293	-	-	-	-
2021					해	당	없	음							

- 수입은 전입금 156억 1백만원과 이자수입 32억 91백만원, 예치금회수 732억 31백만원을 합한 921억 24백만원이며, 예치금 921억 24백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음.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4	10,713	10,713	16,684	10,948	191	5,544	-	5,544	65.6
2023	27,969	27,969	33,660	28,093	4	5,563	-	5,563	83.5
2022	22,035	22,035	27,661	24,474	43	3,144	-	3,144	88.5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107억 1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66억 8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9억 48백만원을 수납하고, 1억 91백만원은 정리보류¹⁾하여 55억 4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65.6%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19~23)

- 금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55.7%로 총 59억 71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 이는 2023년회계연도 120.3%(56억 91백만원) 대비 35.4%p가 높아진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개정됨(2024.1.)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까지 사용되던 용어인 “불납결손”(또는 “결손처분”)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정리보류”로 명칭이 변경됨

필요가 있어 보임.

-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았던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세외수입					
그외수입 (수변감성도시과)	697	771	771	74	· 소송 판결 지연으로 인한 미징수 발생
그외수입 (치수안전과)	0	397	330	397	· 행정재산 손실보상금 등 예상외 수입 발생
지난년도수입 (치수안전과)	100	5,588	27	5,488	·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수변감성도시과)’은 세입 예산액 6억 97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7억 71백만원으로 7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이는 “2022년도 용산 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비용 및 지연 손해금 환수”에 대한 소송환수금 민사소송²⁾ 판결이 지연되어 '24년 회계연도 내 미징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미징수된 소송환수금은 '24.4.5.일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24.5월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음.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치수안전과의 ‘그외수입’은 당

2) □ 소송 추진경과

- '23.03.30.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접수
- '24.04.05. : 판결 선고(서울시 승소)
- '24.04.27. : 소송 확정
- '24.05.07. : 임의변제금 신청(서울시 → 서울고등검찰청)
- '24.05.13. : 국가 손해배상금 입금(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시)

초 예산액은 없었으나, 징수결정액 3억 97백만원으로 3억 9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된 사유는 '23년 행정안전부의 권고³⁾에 따라 서울시가 예비비 8억원을 편성⁴⁾하여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당초 자치구가 제출한 수요 보다 저조 (40.7%)하여 미집행 사업비가 반납되었는바, 이를 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자치구별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사업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구 분	설치현황 (단지)	예산배정 (자치구 신청)	예산집행 내역(단위: 천원)				비고	
			사업내역 (공동주택과 확인)		24년 손실보상금 내역 (세입예산시스템-총괄과세조회)			
			집행액	미 집행액	반납액 (이자포함)	채납액 (25년 재발급 및 조치예정)		
계	109	800,000	325,699	474,301	291,143	67,857	40.7%	
1	광진구	4	15,000	10,863	4,137	4,358	-	72.4%
2	중랑구	6	20,000	17,828	2,172	2,350	-	89.1%
3	성북구	1	7,500	7,500	-	-	-	100.0%
4	서대문구	4	37,500	12,183	25,317	26,276	-	32.5%
5	양천구	16	122,500	40,790	81,710	85,279	-	33.3%
6	강서구	6	30,000	14,470	15,530	19,130	-	48.2%
7	구로구	2	5,000	0	5,000	5,130	-	0.0%
8	동작구	28	222,500	116,890	105,610	110,680	-	52.5%

- 3)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추진 방안 안내' (행안부 재난영향분석과-454, '23.2.2)
 -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사용원칙, 일반예산 및 예비비 등으로 설치 지원 요청
- 4)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700 4, 2023.4.)
 - 물막이판 설치 우선순위 단지 :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 93단지
 - ※ 최근 10년 내 침수피해 지역 내 및 침수피해 발생 단지 중 물막이판 설치 예정단지
 - 1개소당 약 5백만원, 단지당 최대 2천만원, 지원금 50%

지역	단지수	세대수	물막이판 (개소)	총 설치비 (백만원)	지원금 (백만원)	비 고
13개 자치구	93	48,466	320	1,600	800	

9	관악구	9	17,500	0	17,500	18,212	-	0.0%
10	서초구	13	115,000	49,638	65,362	-	67,857	43.2%
11	강남구	11	130,000	29,166	100,834	-	25 조치예정	22.4%
12	송파구	1	20,000	0	20,000	20,728	-	0.0%
13	강동구	8	57,500	26,371	31,129	-	25 조치예정	45.9%

○ 다음으로, 치수안전과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예산액 1억원 대비 징수결정액 55억 88백만원으로 54억 8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예산편성 당시 최근 2개년도('22~'23년) 평균 징수율(3%)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반면, 징수결정액은 이월 체납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상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의 현실화 수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최근 3년간 지난년도수입 징수결정액 차이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b)-(a)
2024	100	5,588	5,488
2023	95	5,013	4,921
2022	99	3,114	3,015

다) 미수납액 (결산서 p.19~23)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55억 44백만원이며,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55억 44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차년도 이월액	55억 44백만원
- 하천사용료	41백만원
- 변상금	57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53억 77백만원
- 기타(그외수입 등)	68백만원

○ 이 중 ‘지난년도수입(소송비용 과년도 체납액 등)’이 53억 77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 이는 고질적인 장기 체납에 따른 것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초기 체납 방지와 고질적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아래 [표]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납세태만(50억 34백만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차년도 이월액)	5,543,640
무재산	336,005
행방불명	96
납세태만	5,034,489
폐업또는부도	32,796
자금압박	1,585
기타	117,236
납기미도래	21,433

- 이에 대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고질적

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조사해 압류 조치하는 한편,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102,926	14,149	15,877	611 (-611)	-	-	132,952	110,230	17,936	497	17,439	3	4,783 (3.6%)
2023	130,208	19,710	800	1,911 (-1,911)	4 (-4)	945 (-945)	150,718	130,267	14,149	600	13,549	9	6,293 (4.2%)
2022	98,516	16,696	-	1,177 (-1,177)	-	884 (-884)	115,212	88,360	19,710	5,084	14,626	2,477	4,665 (4.0%)

가) 개 요

- 예산액 1,029억 2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1억 49백만원, 예비비 사용 158억 7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29억 52백만원으로, 이 중 82.9%인 1,102억 3천만원은 지출하고 13.5%인 179억 3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으로 0.002%인 3백만원을 집행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47억 8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5~54)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47억 83백만원이며, 불용율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등 10건에 해당함.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수변감성도시과	국고보조금 반환	0.3	-	0.3	100.0%
2	수변감성도시과	물순환 정책 활성화	69	41	28	40.4%
3	치수안전과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2.5	0.1	2.4	96.0%
4	치수안전과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300	31	269	89.8%
5	치수안전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	114	26	87	76.8%
6	치수안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1,224	500	724	59.1%
7	치수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13,272	12,340	932	7.0%
8	치수안전과	반포천(동작구) 종합정비	1,900	1,392	508	26.7%
9	치수안전과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펌프, 제전기, 밸브 등) 개량 및 시설보강	7,575	7,120	455	6.0%

○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은 도림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공급관로, 취수시설 및 가압장 등을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89.8%인 2억 69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도림천은 1969년 설치된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공업용수 시설⁵⁾에서 유지용수를 공급받아 왔으나, 공업용수 시설의 노후화 및 사용처 감소 등으로 시설 유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공업용수 공급시설 폐쇄가 결정됨('22.8월)에 따라 신규 수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서울시는 '23.5월 추경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3억원을

5) 영등포 아리수 정수센터 공업용수 시설은 1969년 설치되어 서울 남부 공장밀집지역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였으나, 23년 기준 도림천 유지용수 및 롯데제과 공업용수로만 사용(도림천 유지용수 13,340톤/일, 롯데제과 2,000톤/일)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을 검토하던 중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⁶⁾(’24.8월 준공) 중간보고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되면서 ’24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⁷⁾가 필요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69백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임.

-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에 따른 총 사업비를 면밀히 추계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절차 검토 및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게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24백만원 중 59.1%인 7억 24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시민이 보험사의 풍수해보험

6)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2.08.05.)

○ 목적

- 서울특별시 하천 내에 유지용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유량 공급, 친수용수 기준 미달, 시설효율 저하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하천별 용수공급을 최적화하고, 하천에 기 설치된 용수 공급관망을 이용하여 도심 내 도시관리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수변도시의 실현

○ 범위

- 공간 : 서울시 관내 하천 61 개소 중 국가하천, 실개천, 지방하천 중 대부분 복개구간인 하천 및 서울특별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하천은 제외
- 과업기간 : 2022년 8월 30일 ~ 2024년 8월 28일(24개월)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행정안전부로 풍수해보험료의 국비와 지방비 지급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급한 후 이를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는 자치구에 지방비분을 재배정하여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그림] 참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그림] 풍수해보험 지원 절차

- '22.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1년 5,759건에서 '22년 45,265건, '23년 106,09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급증세가 꺾이면서 '24년 가입자 수가 예측치(79,227건)에 못미치는 44,271건에 불과하여 실가입자 보험료 5억원을 제외한 7억 24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풍수해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가입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자치구를 거쳐 보험사에 보험료가 보전되는 구조(약 1개월 이상 소요)이기 때문에 사전 예산추계의 한계가 있고,
- 또한, 기후변동에 따른 가입 수요의 불확실성도 내제되어 있어 예산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음.

- 다만,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가입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자 현황

구 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가입 내역 (건)	계	195,633	44,271	106,097	45,265
	주 택	40,967	29,697	7,957	3,313
	상가/공장, 온실	154,666	14,574	98,140	41,952
예산액(시비, 백만원)		3,836	1,224	2,512	100
집행액(시비, 백만원)		2,305	500	1,706	99

- ‘반포천(동작구) 종합정비’ 사업은 10여년간 폐쇄 및 방치되어 우범화와 인명 고립사고의 우려가 있는 반포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9억원 중 26.7%인 5억 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불용 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파크골프장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존 계획된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방식의 진출입시설을 계단으로 변경하면서 사업계획이 일부 축소되어 집행잔액 5억 8백만원이 발생한 것임.
 - 이에 따라 진출입시설 관련 사업비는 15억 3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은 당초 1억 6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표] 참조)하였음.

[표] '반포천(동작구) 종합정비' 사업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내역

구분	예산		계	파크골프장	진출입시설	호안정비	안전시설
	시비	구비					
예산편성	19억원	5천만원	19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15억 3천만원	2억 5천만원	-
집행내역	13억 9천만원	5천만원	13억 9천만원	6억원	4억 2천만원	8천만원	2억 9천만원

- 0동 사업은 '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
에서 사업 주체인 동작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
서 예산 재배정을 요청한 점이 지적⁸⁾되어, 당시 기본계획 미
수립 상태에서 향후 설계 및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편성이 적
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바 있는데,
- 결국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져 예산의 불용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철저한 사전계획 검토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⁹⁾(결산서 p.69)

○ 해당없음.

8)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52~253p

(9) 반포천(동작구) 종합정비

○ 동 사업의 주체인 동작구는 (~ 생략 ~)

'23. 12월 반포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후 내년 자체 예산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로부터 금회 편성을 통해 재배정받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당사자인 동작구는 정작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따라서 금회 성급히 공사비를 편성하기보다는 동작구의 설계 진척을 살피면서 추경 등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라) 예산이체 10)(결산서 p.73)

- 해당없음.

마) 예산변경 11)(결산서 p.77)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에 6억 11백만원으로 이 중 ‘물순환 정책 활성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의 특정업무경비로 변경사용 하였으며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3건은 시설비, 감리비 간 변경 사용하였음.

[표] 예산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4건			18,012	611	611		
수변 감성 도시과	물순환 정책 활성화	국외업무 여비	40	2		2024-11-27	'24.1.1. 조직개편, 정기 및 수시 인사이동으로 현원이 증가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발생한바, 예산변경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함
	빗물관리시설 확충	특정업무 경비	40		2		
치수 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시설비	12,045	300		2024-07-26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확보 필요(시설비 예산변경)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감리비	487		300		
치수 안전과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감리비	100	61		2024-02-26	공사 관련 민원 사항 반영을 위해 시설비 공정 추가 필요하여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예산 변경
	방학천(도봉구) 위험	시설비	1,900		61		

- 10)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11)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옹벽 보강공사						
치수 안전과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시설비	3,100	248		2024-08-12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통계목 변경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감리비	300		248		

- 먼저, ‘물순환 정책 활성화’는 국외업무여비 2백만원을 ‘빗물 관리시설 확충’의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당초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의 대민활동비를 현원 6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4년 정기 및 수시 인사이동으로 인원이 70명 이상으로 확충되면서 '24.12월 대민활동비 지급분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임.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은 도림천 복개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림천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 사용은 동일 세부사업 내 시설비 120억 45백만원 중 3억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는 수방대책기간(5.15.~10.15.) 중 하천 내 공사 중단으로 공기 부족이 발생하였고 이에 준공기한이 당초 '24.9.30일에서 '24.12.31일로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감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시설비 3억원을 감리비로 융통하여 사용한 것임.

- 그러나 수방대책기간은 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예측 가능한 계절적 제약사항으로 일정 수립 시 기본 전제 조건으로 반영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공기를 설정하여 추가 감리비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음.
-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는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을 재설치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내 감리비 1억원 중 6천 1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동 공사는 장비 출입을 위한 방학천 좌안 제방 상부도로의 폭이 3~3.5m로 협소([그림] 참조)하고 인근 상가와 밀접해 있어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¹²⁾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추가된 공정(가도 및 배수관 설치 등)의 시설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 이는 공사 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계단계부터 정밀한 현장 여건 분석을 통해 공사계획을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변경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12)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관련 민원 내역

-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2024. 3. 10) : 도봉구 방학1동 인근 주민이 방학천 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인접 주거지에 발생하는 공사 진동 및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함.
- 현장 구청부서 접수 민원 : 인근 주민 다수가 공사구간 내 보행 통행의 불편과 통행로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그림] 방학천(도봉구) 좌안 제방 상부도로 및 가도, 하부 배수관 설치 현황

-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중랑천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활·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 31억원 중 2억 48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동 사업은 '24년 제1회 추경으로 당초 사업비가 27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중 시설비는 6억원이 증액된 반면 감리비는 1억원([표] 참조)만 확보함에 따라 이후 집행 과정에서 감리비 부족분 2억 48백만원에 대해 시설비에서 융통하여 충당한 것임.

[표]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24년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통계목	2024년 예산내역(이월액 포함)		
	본예산	1차 추경	예산 변경('24.7월)
계	2,700,000	3,400,000 (7억원 증액)	3,400,000
시설비(401-01)	2,500,000	3,100,000 (6억원 증액)	2,852,300(247,700 감액)
감리비(401-02)	200,000	300,000 (1억원 증액)	547,700(247,700 증액)

바) 예비비 (결산서 p.81)

- 예비비 사용은 1건 158억 77백만원으로 무상귀속 부당이득 소송 (2023가합62296)에서 패소하고 항소제기를 결정함에 따라 판결금 이자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임.

[표] 예비비 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사용 일자
	정책	단위	세부	목	세목		감	증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일반회계)	유상매각 부당이득 금반환	배상금 등	배상금 등	-	-	15,877	15,877	'24. 7. 31.
예비비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81,353	△15,877	-	65,476	

- 즉,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제기한 무상귀속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가집행금) 158억 78백만원을 지급함에 따른 것임.

- 본 소송은 SH공사가 '18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로 부터 강일동 및 고덕동 일대 64필지¹³⁾를 136억 12백만원에 매

13) 강일동 129-1번지 등 61필지 매매계약 체결

고덕동 359-5번지 등 3필지 매매계약 체결

- 대상토지 목록에 대하여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재산 인계·보상 진행(2018~2019년)

입하여 공원, 녹지, 교육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였으나,

- 매입 대상 부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조사된 국유지로서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된 후 사업계획 승인 당시 용도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래의 공공시설’로 보아야 하고,
-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¹⁴⁾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SH공사가 종전 지급한 토지 매매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23.5.16일 서울시로 청구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이에, '24.6.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7민사부)은 SH공사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서울시가 토지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14)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지급할 것을 판결¹⁵⁾하자 서울시는 이를 예비비로 집행 ([표] 참조)하였으며,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건임.

[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무상귀속 관련 부당이득금 산출 내역
(단위: 원)

총계(a+b)	원금(a)	이 자		
		구 분	원금 ① (13,122,278,667)	원금 ② (489,276,000)
15,877,450,610	13,611,554,667	보상금지급일 ~ 소 제기일	1,156,076,346	29,099,456
		소 제기일 다음날 ~ 판결금지급일	1,041,872,975	38,847,174
		소 계	2,197,949,320	67,946,629
		계 (b)		2,265,895,950

- 동 예비비 지출은 판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항소심에서 본안 다툼을 이어가되 우선 판결금(가집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됨.
- 다만, 본 건은 무상귀속 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 법률검토를 충분히 하여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 (2023가합72296) 부당이득금

원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피고 : 서울특별시

판결선고 : 2024.6.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1,554,667원 및 그 중 13,122,278,667원에 대하여는 2018.5.18.부터, 나머지 489,276,000원에 대하여는 2019.12.19.부터 각 2023.5.16.까지는 별지 3 표 ‘적용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적용 이율’란 기재 각 해당 이율의, 2023.5.17.부터 2024.6.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59~160)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74억 39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329억 52백만원 대비 13.1%에 해당됨.
- 사유별 현황(아래 [표] 참고)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1건에 96백만원, 준공기한 미도래 24건 130억 29백만원, 사전절차 지연 및 기타 7건 43억 15백만원 등 총 32건(174억 4천만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유별	2023	
	건수	이월액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	-
사업계획변경	1	96
준공기한 미도래	24	13,029
사전절차 및 기타	7	4,315
계	32	17,440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유
23건			21,916	15,792	171.1	72.1%	
1	수변 감성 도시과	물순환 관련 시설 표준 설계도면 작성 용역	200	176	24	88%	○ 물순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표준화된 도면 마련을 위한 표준설계도면 작성 용역을 시행중으로, 자료수집, 설계,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방향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유
							모색 위한 용역 준공기한('25.6.30.) 미도래에 따른 이월 요구
2	수변 감성 도시과	안양천(금천구) 수변활 력거점 조성	1,200	940	22	78%	○ 하천점용 허가 승인이 필 요하여 승인 후 공사진행을 위한 사업비 이월 필요
3	수변 감성 도시과	대학로 실개천 시설 및 환경개선	300	179	0.7	60%	○ 상수도 인입공사 및 도로 굴착 일정 협의에 시일이 소 요되어 공사 일정이 당초 '24.9.24. ~12.월말에서 준 공일이 '25.5월말로 변경되 어 이월 필요 (미필: 수도인 입 공사비)
4	수변 감성 도시과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3,079	1,829	0.6	59%	○ 준공 기한이 25.4.30.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원활 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고이 월 필요
5	수변 감성 도시과	구파발천(은평구) 수변 활력거점 조성	2,000	1,428	-	71%	○ 설계내역서 검토, 계약심 사('24.5.) 등 사전절차 이행 에 따른 기간 소요로 공사 발주('24.6.) 지연되어 준공 기한('25.6.) 미도래하여 이 월 필
6	수변 감성 도시과	양재천(강남구) 수변활 력거점 조성	3,400	2,201	-	65%	○ 사전절차 이행(계약심사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24.7월 공사발주 및 착공(8 월)하였으며, '25.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하여 이월 필요 ○ 준공식개최비용에따라사고 이월필요
7	수변 감성 도시과	성북천(성북구) 수변활 력거점 조성	2,000	1,985	-	99%	○ 사전절차(심의 등)지연으 로 '24년 10월 설계 준공되 어 '24년 11월 말 공사 발 주하여 착공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도 급비 이월 필요
8	수변 감성 도시과	무동천(중랑구) 수변활 력거점 조성	1,000	649	-	6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4.9월에 완료되어 '24. 10 월 발주('24. 11월 계약 및 착공)하여 철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필요
9	수변 감성 도시과	수변감성 차크닉	545	500	-	92%	○ '24.10월 공사 착공하여 '24.11월 하천점용허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 족으로 인한 이월 필요
10	수변 감성 도시과	우이천(강북구) 수변활 력거점 조성	1,500	1,091	-	73%	○ '24년 9월 착공하여 '25 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기한('25.3.31.) 미도래에 따 른 도급비 증액분 이월 필요
11	수변 감성 도시과	여의천(서초구) 수변활 력거점 조성	1,000	1,000	-	100%	○ 설계용역이 10월말 완료 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등 으로 11월말 계약 및 착공 하였으며, '25.6월 준공 예 정으로 이월 필요
12	치수 안전과	대방천(영등포구) 단면 협착구간 확장	400	311	89	78%	○ 과업 대상구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해석 등 검토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가 필요하여 준공기한 연기('25.3월말)에 따른 사업비 이월
13	치수 안전과	반포천(서초구) 하류부 환경정비 및 수변문화 공간 조성	200	86	28	43%	◦ 용역 기간('25.7.30.) 미 도래에 따른 용역비
14	치수 안전과	염창유수지(강서구) 물 놀이 분수대 설치	440	215	6	49%	◦ 구조안정성 검토 용역 시 행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 로 설계 지연되어 '24년 10 월 공사 발주, 11월 공사 계약 및 착공하였으나 12월 동절기 토양 결빙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절대공기 부족 에 따라 준공기한(2025년 4 월)을 연기하여 이월 필요
15	치수 안전과	가산빛물펌프장 119안 전센터 신설 타당성조 사 용역	100	97	0.3	100%	'25년 3월 준공예정으로 준 공기한 미도래
16	치수 안전과	불광천(마포구) 메타세 쿼이아길 조성	500	348	0.3	70%	◦ 실시설계 기간 소요 (2024. 3. ~ 8.)되었으며 월 드컵천 경관폭포 조성사업의 중복 사업구간 결정 등 지연 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
17	치수 안전과	제방산책로(동대문구) 환경정비	290	236	0.2	81%	◦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 업지연 및 동절기 벽화 타일 시공 품질 확보 어려움, 자 재 제작 소요기간 등에 따 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비 이월 필요
18	치수 안전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 용수 추가공급	1,400	558	-	40%	◦ 공사 준공기한이 '25년 3월까지 연장되어 공사비 이 월
19	치수 안전과	감이천(송파구) 치수안 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	500	500	-	100%	◦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으 로 공사일정 지연되어 '24. 12. 17. 긴급 공사발주하여 '25년 2월 착공, 12월말 준 공예정에 따른 사업비 이월
20	치수 안전과	반포유수지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300	96	-	32%	◦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11월 빗물 배수터널 기본설계 반영에 따른 순차적 진행을 위해 사 고이월
21	치수 안전과	홍제천, 불광천(서대문 구) 유지용수 수질개선 정비공사	140	140	-	100%	◦ 용역 준공일이 '25년 12 월말로 예정되어 용역비 이월
22	치수 안전과	불광천(은평구) 진출입 로 개선	880	685	-	78%	◦ 공사 준공 기한('25.2월 말)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이월
23	치수 안전과	성내천(송파구) 수심확 보 및 친수환경 개선	542	542	-	100%	◦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으 로 공사일정 지연되어 '24. 12. 17. 긴급 공사발주하여 '25년 2월 착공, 12월말 준 공예정에 따른 사업비 이월

-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외 8개 사업’은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하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변감성도시 자치구 공모사업([붙임] 2 참조)으로 추진한 것으로, 사업별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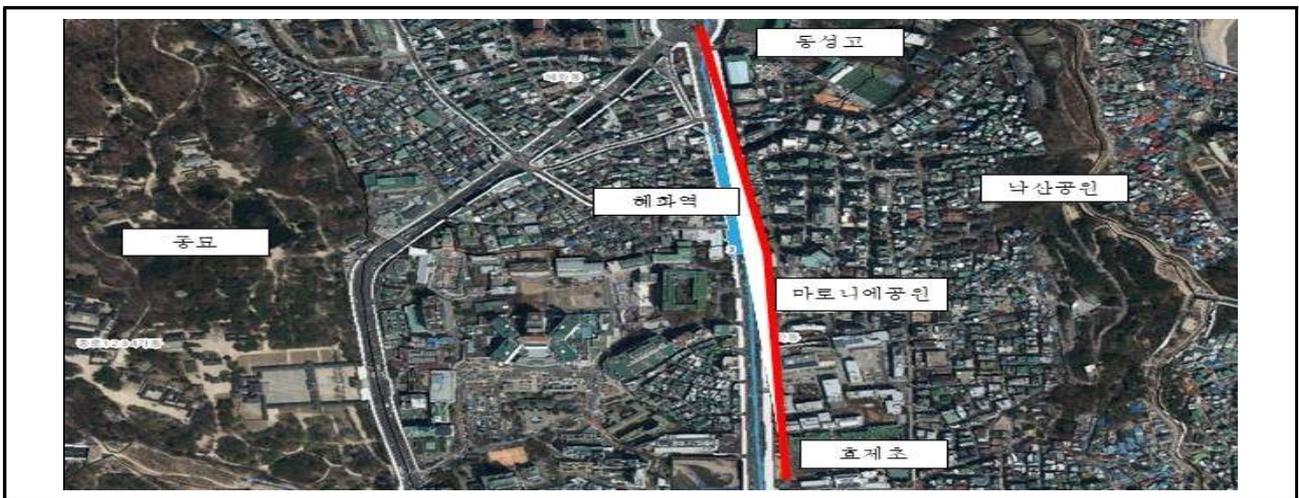
[표]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추진계획
	합 계	15,724	11,623	22.6	72.1%	
1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1,200	940	22	78%	준공/개장 : '26.6.
2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3,079	1,829	0.6	59%	준공/개장 : '26.12.
3	구파발천(은평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2,000	1,428	-	71%	준공 : '25.7. 개장 : '25.10.
4	양재천(강남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3,400	2,201	-	65%	준공/개장 : '25.6.
5	성북천(성북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2,000	1,985	-	99%	준공 : '25.8. 개장 : '25.9.
6	목동천(중랑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1,000	649	-	65%	준공 : '25.5.
7	수변감성 차크닉	545	500	-	92%	준공 : '25.5.
8	우이천(강북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1,500	1,091	-	73%	준공/개장 : '25.5.
9	여의천(서초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1,000	1,000	-	100%	준공/개장 : '25.12.

- 이들 사업은 사전절차(계약심사, 하천점용허가,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 등)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 등을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사전에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보이는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점에 관련 사전 절차의 이행 가능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대학로 실개천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은 시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 설치된 친수시설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60%인 1억 79백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그림] 사업대상지 위치도

- 이는 '09년도에 조성 완료¹⁶⁾된 대학로 실개천(실개천 2개소, 연못 2개소, 수경시설 7개소 등)이 노후화되어 실개천, 벽천 등의 시설물 및 노후배관·펌프시설을 정비하고 상수도 관로 인입 공사를 추진코자 '24.9월 착공하였으나,
- 상수도 인입공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서울아리수본부)과의 업무협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를 사고이월한 것임.
- 이처럼,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 과정에

16) 「대학로를 흐르는 흥덕천 실개천 부활」, 물재생계획과-4894, 2008.05.14.

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후속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그림] 대학로 실개천 시설 현황 및 문제점

- ‘대방천(영등포구) 단면 협착구간 확장’ 사업은 대방천 중·하류 복개구간의 협착부를 정비하여 통수단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현액 4억원 중 77.8%인 3억 11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침수모델링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하수관거 유입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용역의 과업 변경이 불가피했으며,
- 이로 인해 유관기관(남부도로사업소, KT, 한천 등)과의 협의('24.12~'25.3월), 설계안전성검토('25.4월), 교통처리계획 심의

(’25.5월)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을 당초 ’24.12월에서 ’25.5월로 연기함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임.



[그림 6] 대방천(영등포구) 단면 협착구간 확장 위치도 및 조감도

- 동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당시 기초조사 및 현장 분석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과업이 사업 착수 이후 확인됨에 따라 공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현장 여건 분석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예산이 회계연도 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감이천(송파구)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및 ‘**성내천(송파구) 수심확보 및 친수환경 개선**’ 사업은 수심이 얕아 하천 둔치 침수가 빈번한 감이천과 성내천의 수심을 확보하여 치수 안전성을 제고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사업 주체인 송파구는 감이천의 경우 성내천에 인접한 지류하천([그림] 참조)으로 상호 간 수위의 영향을 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들 2개 사업을 송파구의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¹⁷⁾ 내 세부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기철 하천 수위 변동에 따른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용역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24.9월까지, 공사계약은 같은 해 12월에야 완료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예산현액 전액 사고이월이 2개 사업 모두에서 발생한 것임.
 - 감이천과 성내천은 구조적으로 연계된 하천 계통상 연계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사업들은 당초 의회에서 각각 개

17)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송파구 교통환경국 치수과-204693

□ 공사개요

- 공 사 명: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공사
- 총공사비: 3,042백만원(1차분 : 1,842백만원, 2차분 : 1,200백만원)

□ 예산과목

- 치수과, 수해없는 치수관리,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및 하천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특별교부금, 800백만원
- 서울시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감이천(송파구)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시비재배정, 500백만원
- 서울시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성내천(송파구) 수심 확보 및 친수환경 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시비재배정, 542백만원

별사업으로 심의·의결되었음도 자치구가 자체 판단으로 이를 통합·연계한 것은 예산의 목적별 독립성과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다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짐.



성내천 및 감이천 위치도



감이천 둔치 침수(2mm/1시간)



성내천-감이천 합류부 완전 침수(10mm/1시간)

[그림] 성내천-감이천 위치도 및 침수 내역

- 따라서 자치구가 사업주체인 사업들을 계획할 때는 사전 현장 점검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공유하여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홍제천, 불광천(서대문구) 유지용수 수질개선 정비공사’는 홍제천과 불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직수시설 및 하상여과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4천만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4.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되었으나, 사업 주체인 서대문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같은 해 11월에 득하고, 12월에야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전액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는 추경 편성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성급하게 계상한 결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곤란한 예산 편성은 집행을 저하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은 '23년도 본예산에서는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로 최초 편성되었다가, '24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홍제천·불광천 유지용수 수질개선 정비공사’로 변경되었으며, '25년도 본예산에서는 다시 최초의 사업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사업 명칭이 재차 변경된 것으로 확인([표] 참조) 되는데,

[표]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시기	사업명	편성예산
2023년 본예산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	300
2024년 제1회 추경	홍제천, 불광천(서대문구) 유지용수 수질개선 정비 공사	140
2025년 본예산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	1,781

- 이처럼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명 불일치는 예산 흐름 및 집행 이력의 명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는바, 가급적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내용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예산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4	30,875	30,875	23,144	23,144	-	-	-	-	100.0
2023	9,966	9,966	8,531	8,531	-	-	-	-	100.0
2022	15,000	16,300	16,300	16,300	-	-	-	-	100.0

가) 개요

- 예산현액 308억 75백만원 대비 75%인 231억 4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31억 44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145,129	42,476	-	111 (-111)	-	-	187,605	48,046	105,856	70,831	35,025	98	33,604 (17.9)
2022	45,971	9,549	-	-	-	-	55,521	46,219	4,946	-	4,946	-	4,354 (9.4%)
2021	56,876	5,389	-	135 (-135)	-	-	62,265	51,925	9,550	2,500	7,050	-	790 (1.3%)

가) 개요

- 예산액 1,451억 2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4억 7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76억 5백만원으로, 25.6%인 480억 46백만원은 지출하고 56.4%인 1,058억원 5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9%인 336억 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5~57)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876억 5백만원 대비 17.9%인 336억 4백만원이며, 불용률 30%(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3건에 해당함.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치수안전과	대치역사거리 빗물펌프장 신설	2,000	-	2,000	100%
2	치수안전과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42,040	6,356	24,040	57.2%
3	치수안전과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30,884	3,984	6,884	22.3%

- ‘대치역사거리 빗물펌프장 신설’ 사업은 대치역 사거리로 집중되는 도곡동 일대의 우수를 양재천으로 배제하고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원 전액 불용하였음.

-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최한 '23.7월 주민설명회와 '23.11월 간담회, 그리고 서면 민원 및 탄원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펌프장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표] 참조)되면서 서울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표] '대치역사거리 빗물펌프장 신설' 주민 반대 민원 내역

□ 주민 반대 민원내용

< 영동4교 주변 빗물펌프장 추진 반대 세부내용 >

- 빗물펌프장 공사로 인한 대치초·대청중 학생 통학길 안전 위협
- 침수피해가 없는 도곡역 인근 빗물펌프장 설치 수용 불가
- 빗물펌프장 설치로 공원부지 내 황토길·메타세콰이어길 훼손
- 빗물펌프장은 악취발생 및 고압 전류가 흐르는 혐오시설

□ 주민반대 현황

- 2023.07.10. 주민설명회 개최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주민 등100여명 참석)
 - 반대 : 타워팰리스 등 주민 일부 반대의사 표명 (사유 : 땅꺼짐, 소음, 불편 등)
 - 찬성 : 대치1,2동 주민 대다수 찬성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 2023.11.13. 주민간담회 개최 (구의원, 반대주민 등 80여명 참석)
 - 침수피해를 입는 양재천 하류지역(세텍부지)에 펌프장을 설치(대치1중설)하는 것이 타당
- 2023.11.21. 서면 민원 제출 (개포우성아파트, 사업 재검토 요청)
- 2023.12.26. 빗물펌프장 건립 반대 서명부 제출 (726명, 타워팰리스 2·3차)
- 2024.01.05. 펌프장 건립 반대 방문 항의 (개포우성아파트, 8명)
- 2024.01.30. 펌프장 건립 반대 탄원서 제출 (개포우성아파트, 1506명)
- 2024.02.06. 탄원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국민권익위→市)
- 2024.03.13. 대청중 인근 빗물펌프장 설치 관련 협조 요청 (대청중→市)
- 2024.04.08.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설치 진정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市)
- 2024.05.~현재. 부지선정 등 추가 검토중 (물재생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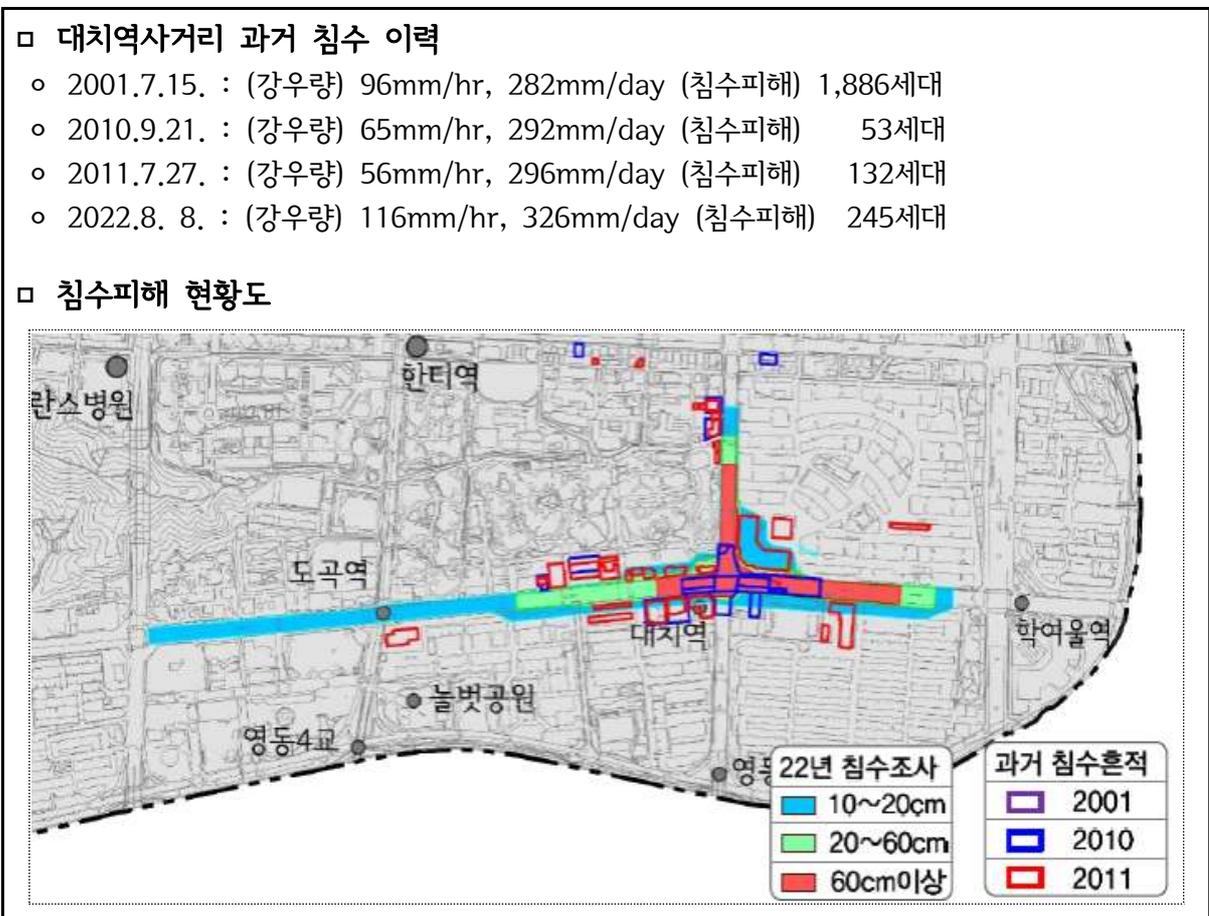
- 그 결과, 당해 연도에 구체적인 부지 확정이나 계약 등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 예산과로부터 명시이월을 거부('24.9월) 당하였으며, 사고이월 역시 원인행위 미필로 적용이 불가('24.12월) 하여 예산액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임.

- 동 사업은 과거 침수피해 이력([표] 참조)이 다수 존재하는 대치역사거리 일대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급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 되었는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할 서울시

가 그 책무에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바,

- 주민 민원이 사업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부터 주민의견 수렴, 부지 적정성 검토 등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동 사업과 같이 재해 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대치역사거리 과거 침수 이력



-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및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 시설 설치’ 사업은 ‘22.8.8일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¹⁸⁾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

18) 2022년 8월 8일 최대강우량

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총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의 1 단계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 중 2개소에 해당함.

-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이하 ‘강남역’) 사업은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에서 반포유수지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L=5.8km, D=6.5m~10.6m, 저류량 48.5만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20억 4천만원 중 57.2%인 240억 4천만원을 불용하였으며,
-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이하 ‘광화문’) 사업은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계천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L=2.3km, D=7.2~9.2m, 저류량 12.2만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308억 84백만원 중 22.3%인 68억 84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들은 '22.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¹⁹⁾받은 이후,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5% 지원 가내시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 '24년도 예산 또한, '23.11월, 기획재정부(환경부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를 통해 1단계 3개 사업(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한 총사업비를 당초 서울시 계획인 1조 4,103억원에서 기획재정부 조정안인 1조 3,689억원으로 조정하여 이를 반영한 가내시액으로 당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강남역 일대 116mm/h(150년 빈도), 도림천 일대 142mm/h(500년 빈도)

19) 2022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선정 결과 통보(환경부)_기획재정부(2022.8.25.)

- 환경부(생활하수와 한강유역환경청)는 중앙정부의 세수결손 등 재정 여건을 사유([표] 참조)로 강남역 사업의 경우 국비 가내시액 80억 1천만원 중 20억원만을, 광화문 사업의 경우 국비 가내시액 57억 21백만원 중 40억원만을 실제로 교부한바,

[표] 강남역·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 국비 가내시액 관련 출장보고서

보고내용	
일시	2024.12.2.(월) / 14:00
건명	출장결과보고서(12.2.)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한강유역환경청(하남시)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대심도사업팀장, 담당자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담당자 □주요내용: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 설명 / 국비 교부 관련 협의 <p>[서울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편성된 예산(국비) 전액 교부 요청 (강남역, 광화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예산은 전액 명시이월 신청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지방비 매칭 금액까지 감 조정해야 하는 실정임. · 금년도 예산 불용 시 향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우려됨. <p>[한강유역환경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세수결손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예산 교부는 어려움 - 향후 집행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 대심도 예산 편성 요구시, 요청액 전액 반영하겠음.

- 국비 미교부액 따른 시비 매칭분을 포함한 강남역 240억 4천만원과 광화문 68억 84백만원이 금회 불용된 것임([표] 참조).

[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회계연도						불용액 (①+②)
	예산현액	편성예산		국비 교부액	국비 미교부액(①)	국비 미교부액 시비 매칭액(②)	
		시비(75%)	국비(25%)				
강남역 일대	42,040	32,040		2,000	6,010	18,030	24,040
	24,030	8,010					
광화문 일대	30,884	22,884		4,000	1,721	5,163	6,884
	17,163	5,721					
도림천 일대	62,124	50,000		0	0	0	0
	37,500	12,500					
합 계	135,048	104,924		6,000	7,731	23,193	30,924
		78,693	26,231				

- 반면, 도림천 사업은 국비 가내시액이 전액 반영되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역과 광화문 사업은 시비와 국비 매칭 비율(75:25)을 기준으로 할 때 도림천 사업에 비해 금회 예산 집행 규모가 크게 축소 되었으며,
- 향후에도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1단계 사업의 준공 목표 예정일인 '28.12월 내 완료'가 우려되는바,
- 서울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국비 교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 예산전용

- 해당 없음.

라) 이체

- 해당 없음.

마) 예산변경 (결산서 p.80)

- 예산의 변경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예산 변경사용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건			5,679	111	111		
치수안전과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401-01 시설비	5,379	111	0	2024-09-27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통계목 변경
		401-02 감리비	300	0	111		

-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도림천 일대 침수 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신림 공영차고지 사업부지 지하 2층에 저류시설을 병행설치 하는 것으로,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 53억 79백만원 중 1억 11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함.
- 이는 '25년 우기 전 저류조 가동을 목표로 '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2억 7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예산이 전액 시설비로 계상되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추가 투입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할 수 없어 감리비 부족분 1억 11백만원이 발생함에 기인하는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당부됨.

마)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61~162)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350억 25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876억 5백만원 대비 18.6%에 해당됨.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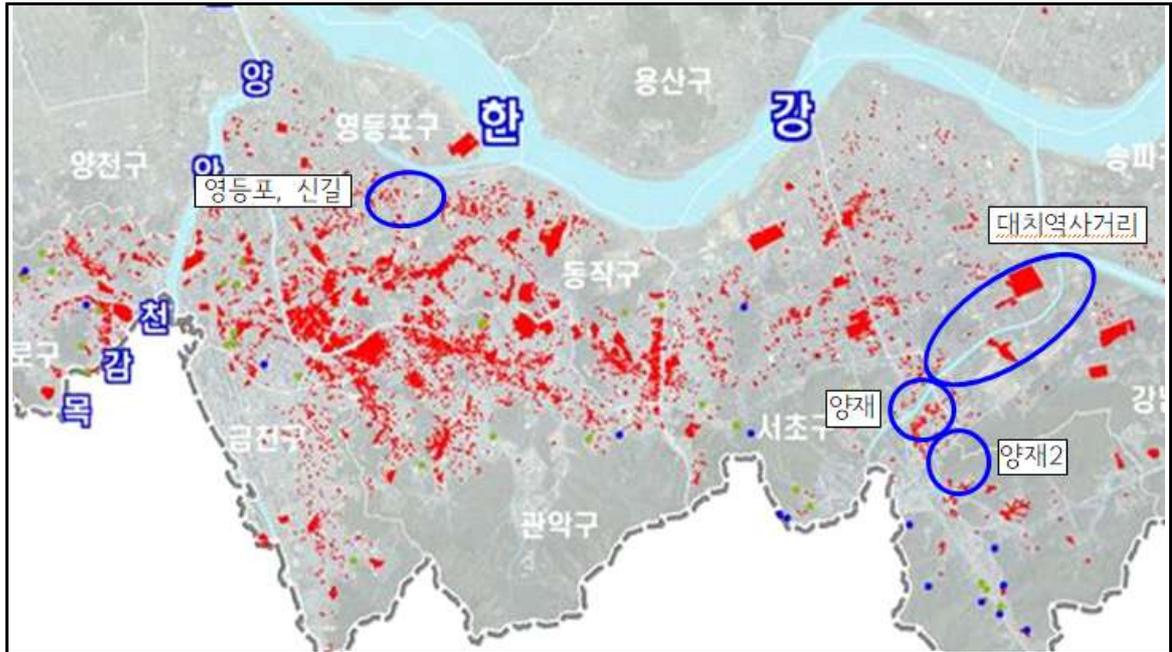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	치수 안전과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2,200	854	145	39%	'24년 12월 공사 시행하여 '25.6월말 완공 예정에 따른 공사비 이월
2	치수 안전과	불광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 작성 용역	800	400	-	50%	증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지연으로 동 사업의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이월
3	치수 안전과	양재 빗물펌프장 증설	2,000	2,000	-	100%	서초구에서 추진중인 양재천변 시설녹지 재정비 사업과 정합성 고려한 추가 과업 수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계용역 준공일이 '25.2.28로 연기되어 공사비 (미필)이월
4	치수 안전과	양재2 빗물펌프장 신설	2,000	2,000	-	100%	'24.10.31. 실시설계가 완료, '25년 1월 공사 및 감리 발주 예정으로 공사비 (미필)이월
5	치수 안전과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2,000	1,900	-	95%	조달청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공사이며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절차 진행중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하여 이월
6	치수 안전과	신길 우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	1,740	1,740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여, '24.12.27. 개찰 이후 '25.1월 조달청 종합평가 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되므로 이월 ○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계약이사업 수행능력평가등계약사전절차이후9월 말에체결되어'25년4월말준공예정으 로이월

- '양재 빗물펌프장 증설', '양재2 빗물펌프장 신설',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신길 우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 사
업은 배수시설을 신·증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시가 '22.8.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다수의 침수피해²⁰⁾가

20) '22.8.8(월) 20 ~ 22시 시간당 100mm, 1일 300mm 이상 규모(약 300년 빈도)의 강우로 다수의 침수피해 발생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수립한 ‘배수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²¹⁾([그림] 참조)을 근거로 추진한 사업에 해당함.



[그림] 빗물펌프장 신·증설 추진사업 대상 지역

- 동 사업들은 서울시가 '23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24.10월)하였고, '24년에는 시설비와 감리비를 편성하여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회 4개 사업 모두 사고이월이 발생함.
- 먼저, ‘양재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은 대상지가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양재천변 시설녹지 재정비 사업’²²⁾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두 사업 간의 상호 영향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빗물펌프장 건축물 및 조경 등에 대한 경관심의

- 인명피해(사망 8명), 이재민(5,848명), 시설물파손 및 재산피해 다수 발생

21) ‘배수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22. 10. 6.)

22) ‘양재천변 시설녹지 재정비 사업’ 서초구청 푸른도시과 (2024.01.10.)

를 '24.4월 실시하여 같은 해 6월에 완료하였으며,

- '24.8월 설계자문회의와 '24.11월 교통소통대책 심의대책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준공이 당초 계획인 '24.12월 보다 지연된 '25.2월로 연기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예산현액 20억원 전액 사고이월함.
- 이처럼 사업대상지 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인해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전절차가 발생하여 예산의 집행이 불가피하게 지체된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사례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전 유관 사업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양재2 빗물펌프장 신설' 사업은 사업 주체인 서초구가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기 위해 서울시 기술심의를 '24.5월 득하고 이후 같은 해 7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8월 경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을 소요하면서,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4.10월에야 준공되었고 공사발주는 '25.1월에 이뤄짐에 따라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임.
- 이처럼 다수의 사전절차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연 가능성이 높은바, 차수계약 등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과 ‘신길유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 주체인 영등포구가 두 사업의 유사성과 ’22.8월 집중호우 당시 두 사업 부지의 동시 침수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영등포·신길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공사’에 포함([표] 참조)하여 통합 추진한 사업임.

[표] 영등포 ‘영등포·신길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공사’ 발주계획

「영등포·신길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공사」			
I 추진 근거			
□ 침수해소사업 추진계획 송부 및 사업 시행부서 지정 통보 [市 물재생계획과- 5987 (2024.04.11.)]			
□ 배수개선사업 성과품 송부 및 공사발주 의뢰 [市 물재생계획과- 15157 (2024.09.26.)]			
II 사업 개요			
○ 위 치 :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및 신길동 일원			
○ 공 사 비 : 69,815백만원 (시설+정기계획)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제외 - (토목비) 47,733, (전문공사비) 10,766, (정기측량 및 기타) 11,316			
○ 공사기간 : ’24.12. ~ ’28.9. (착공 후 45개월)			
○ 예산 현황 (시설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이후
시설비	69,815	6,990	62,825
○ 예산과목			
- 3,550백만원 : 市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 관리, 하수관로 신설개량(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영등포 신길펌프장주변 배수시설(관로)개선, 시설비			
- 1,900백만원 : 市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 시설비			
- 1,540백만원 : 市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신길 유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 , 시설비			

- 다만, 영등포구의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698억 15백만원에 이르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3)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원 이상인 공사로서 조달청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 '24.10월 입찰 공고 이후 종합평가 심사 일정으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25.1월로 지연되었고 착공을 위한 계약도 '25년 3월에 서야 체결됨에 따라,
-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은 예산현액 20억 원 중 95%인 19억 원을, '신길 우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은 예산현액 17억 4천만원 전액을 각각 사고이월한 것임.
- 즉,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한 이후, 자치구가 이를 통합 발주함으로써 조달청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진 것에 기인하는바,
- 서울시는 자치구로 재배정하는 사업 중 자치구가 복수의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 및 계약 절차상 제약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임.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 3. (생략)
- ② ~ ⑤ (생략)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4	32,101	32,258	31,866	31,866	-	-	-	-	100.0
2023	36,612	37,339	34,341	34,341	-	-	-	-	100.0
2022	33,731	33,731	33,115	33,115	-	-	-	-	100.0

가) 개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22억 58백만원으로 318억 66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18억 66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나) 세수추계(결산서 p.25-26)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98.9%로 총 3억 92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음.

[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	차액(b)-(a)	사유
경상적 제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85	48	48	-37	보조금 수입 감소로 예금 이자수입감소
임시적 제외수입					
그 외 수입	-	1	1	1	비정기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반납금 수입 등
보조금					

기금	29,172	28,817	28,817	-355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세입 감소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	2	2	2	비정기적인 2023년도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지원사업 잔액 반납분
내부거래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26	223	223	-23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정산 지연으로 반납금 2025회계연도에 세입처리함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 부족 수납
예탁금이자수입	12	11	11	-1	예산액 대비 이자수입 감소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한강수계 관리기금전입금)’은 예산액 321억 1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억 35백만원 감소한 318억 66백만원으로,

- 이는 물이용부담금²⁴⁾ 징수교부금을 당초 291억 7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 비용이 288억 16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 인임.
- 참고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 수질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입조치 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기금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24) ※ 물이용부담금 개요

- 부과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목 적 : 팔당호 수질 개선 사업 재원 마련('99년부터 부과)
- 부과방법 : 수도요금고지서에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통합 부과 징수
- 연도별 징수단가 (단위 : 원/톤)

연도	'99~'00	'01~'02	'03~'04	'05	'06	'07	'08~'10	'11~현재
부과금	8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표] 기금 세입 결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감소사유
소계	29,172,074	28,816,638	△355,436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1,350,000	1,350,000	-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510,000	510,000	-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190,000	190,000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58,991	158,991	-
잠실상수원(기금)	3,212,811	3,212,811	-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197,355	197,355	-
한강분류쓰레기 처리사업	1,677,000	1,677,000	-
기금사업관리비	21,000	21,000	-
정수비용지원	229,933	229,933	-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170,000	2,814,564	△355,436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변동)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	823,000	823,000	-
환경기초시설 설치	3,037,000	3,037,000	-
환경기초시설 운영	14,594,984	14,594,984	-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32,101	157	-	-	-	-	32,258	30,292	70	-	70	875	1,021 (3.2%)
2023	36,612	727	-	-	-	36,519	37,339	32,727	157	-	157	1,172	3,282 (8.7%)
2022	33,731	-	-	-	-	-	33,731	30,060	727	-	727	1,965	978 (2.9%)

가) 개 요

- 예산액 321억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2억 58백만원으로, 이 중 93.9%인 302억 92백만원은 지출하고, 2.7%인 8억 75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0억 2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8~59)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정수비용지원 및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3건임.

[표] 불용률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1	물재생시설과	예비비	276	-	276	100%
2	물재생시설과	정수비용지원	230	-	230	100%
3	물재생시설과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50	12	38	76.6%

- 먼저, ‘예비비’는 당해연도 내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
- 다음으로, ‘정수비용지원’은 전년도 상수원 원수에서 녹조로 인한 맛·냄새물질이 일정기준($0.02\mu\text{g}/\text{L}$)을 초과 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정수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2억 3천만원을 '24.9월 교부받아 동년 12월에 간주처리하여 각 정수센터로 재배정하였으나 '24년도 계약의뢰 기한('24.12.03.)이 마감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간주처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는 이전재원을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24.9월 통보된 국비를 12월에서야 간주처리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은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배출부과금의 10%를 환경부에서 징수경비로 교부받아, 해당 금액의 90%를 자치구에 재교부하는 것으로,
 - '24년 환경부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4.6월부터 징수비용이 교부되지 않아 자치구 교부가 중단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4년 미지급된 징수비용(14,670천원)은 '25.3월 교부되어

세입조치 후 중구 등 9개 자치구에 재교부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변경사용

- 해당없음.

마)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7천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322억 58백만원 대비 0.2%에 해당되고,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	사 유
1건							
1	물재생 시설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493	70	0	14.2	쓰레기 처리연간단가 계약시 업체 선정 및 계약까지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5년 2월까지 준공기간을 정하여 사고이월 필요

-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한강수계관리기

금으로부터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한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용역 비용의 55%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것으로, 예산현액 4억 93백만원 중 14.2%인 7천만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25년도 용역 계약 전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24년도 용역기간을 '24.1월부터 '25.2월로 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 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다음 연도 이월 액
2024	92,124	-	15,601	-	3,291	73,231	-	-	92,124	-	92,124	-	-	-	-
2023	73,231	-	20,000	-	2,938	50,293	-	-	73,232	-	73,232	-	-	-	-
2022	50,293	-	49,646	-	647	-	-	-	50,293	-	50,293	-	-	-	-
2021					해	당	없	음							

* 관련 용어

수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예치금 잔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소방방재청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 국비분담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이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 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타 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가) 개 요

- 물순환안전국 소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임.

나) 기금 총괄(결산서 p.91)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²⁵⁾은 전년도말 조성액 732억 3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²⁶⁾ 188억 92백만원을 합산한 921억 2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 732억 31백만원보다 조성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회전기금	73,231	18,892	18,892	-	92,124

다) 기금 수입 결산(결산서 p.95)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현액 915억 33백만원 중 100.6%에 해당하는 921억 2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5) 당해연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6)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이자수입+기타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 징수결정액(수납액)이 수입계획현액보다 5억 91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시금고의 이자수입이 계획(27억원) 대비 증가하여 수납(32억 91백만원)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회전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69,646	73,293	-	73,293	73,231	73,231

라) 기금 지출 결산(결산서 p.96)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 915억 33백만원에서 예치금으로 921억 24백만원을 지출함.

[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75,992	91,533	-	91,533	92,124	-

[붙임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개선건의사항

[붙임 2]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

연번	시정권고사항	내용	조치계획	소관실국 (부서명)
54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운용의 실효성 확보 필요	회전기금은 장기 투자사업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단순한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야 함. 따라서,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 주요 사업 일정에 맞춰 기금이 실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립과 집행의 균형을 통해 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조치완료) '25년 5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의결로 하반기에는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비 192억원을 집행할 예정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54.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운용의 실효성 확보 필요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투자사업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이 기금은 노후 하수시설물 교체에 대비한 감가상각비의 사전 확보와, 대규모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한 여유재원 마련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4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분	수입액	지출액
회전기금	92,123,643	0

※ 기금의 용도

-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자본예산에만 해당)
-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기금 증식을 위한 용자 및 출자

다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현재까지 실제 집행 실적은 없는 상황으로, 기금이 본래 목적인 중장기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적기 집행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나. 시정권고

회전기금은 장기 투자사업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단순한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야 함. 따라서,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 주요 사업 일정에 맞춰 기금이 실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립과 집행의 균형을 통해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조치계획

연 번	개 선 건의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서명)
16	빗물배수터널 장마철 대비 적기 준공 필요	<p>당초 계약시 착오나 오류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대폭 증가로 인하여 결국 시민의 추가 부담금으로 대폭증가될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여름철 홍수위기에 처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도래하고 있음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p> <p>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유로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과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총무부와 방재시설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로서 설계변경계약을 전담으로 하는 『민간단체 중심 공사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을 구성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함.</p>	<p>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협의(8개월) 및 입찰 공고 시 무응찰 유찰(2회)·단독입찰 유찰(2회)됨에 따라 계약 방식을 변경(공개경쟁입찰 → 수의계약) 입찰 하였음.</p> <p>따라서 당초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며, 작년 12월 4일 우선 시공분 계약 완료 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음.</p>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16. 빗물배수터널 장마철 대비 적기 준공 필요

[빗물배수터널 설치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최초 시작된 사업으로서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 진행,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및 계약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2년이 경과한 2024년 12월에 착공하였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진도율	비고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빗물배수시설 설치	104,124,000	16,385,407	87,738,593	15%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년간)
- 총 공사비 : 1조 3,689억원
 - 도림천 일대(1권역) : 5,005억원
 - 강남역 일대(2권역) : 5,386억원
 - 광화문 일대(3권역) : 3,298억원
- 계약방법 변경 : 경쟁입찰→ 수의계약
- 공사일정
 -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2024.12월)
 - 본공사 계약 및 착공(2025.10월)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 명시이월액 분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
강남역 빗물배수시설 설치	39,810	12,606	6,354	3,045
광화문 빗물배수시설 설치	29,204	8,302	3,980	13,963
도림천 빗물배수시설 설치	59,974	11,811	6,045	47,850
합 계	128,988	32,719	16,379	64,858

※ 명시이월 이유 : 총사업비 협의(8개월) 및 턴키공사 유찰(4개월)로 인한 사업지연 (전체사업평균율: 19%, 당해사업비율: 50%)

나. 개선건의

당초 계약시 착오나 오류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가를 유발, 결국 시민의 추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름철 홍수위기에 처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과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총무부와 방재시설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로서 설계변경계약을 전담으로 하는 『민간단체 중심 공사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을 구성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함.

[붙임 2]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현황('24.5월 기준)

연번	구분	하천명(자치구)	위 치	사업내용	추진계획
1	'23~'24년 완료운영 (8개소)	홍제천(서대문)	홍은동 429 일대	수변테라스 카페, 북카페	('23.4.~)
2		도림천(관악)	신림동 1642-7일대	공유형 수변테라스(6개소)	('24.5.~)
3		홍제천(종로)	홍지동 136-3일대	수변공간 및 문화재 정비	('24.7.~)
4		도림천(동작)	신대방동 702-4일대	숨마당, 다모임마당(커뮤니티 공간)	('24.8.~)
5		세곡천(강남)	세곡동 509일대	수변 스탠드형 쉼터, 사면놀이터	('24.11.~)
6		불광천(서대문)	북가좌동 352-1일대	수변 스탠드형 쉼터, 야외테이블	('24.12.~)
7		불광천(은평)	응암동 610-2일대	수변무대, 수변스탠드, 휴게데크	('24.12.~)
8		고덕천(강동)	고덕천 하류(고덕교~한강)	생태·조망·쉼터·놀이공간	('24.12.~)
9	'25년 개장 (9개소)	안양천(구로)	신정동 871-24일대	피크닉존, 휴게스탠드, 놀이터, 매점	('25.5.~ 운영)
10		묵동천(종랑)	면목동 일대	장미공원카페, 다목적공간	
11		우이천(강북)	도봉로101길 45일대	수변테라스, 수변스탠드, 워터스크린	준공/개장 : '25.5.
12		양재천(강남)	개포동 1279 일대	수변카페, 전망공간	준공/개장 : '25.6.
13		성북천(성북)	성북천 성북구 구간	수변광장, 문화예술거리	준공 : '25.8. 개장 : '25.9.
14		구파발천(은평)	진관동 72-23일대	휴게전망대, 수변카페	준공 : '25.7. 개장 : '25.10.
15		당현천(노원)	상계동 772 일대	전망대·카페(포장)·전망브릿지	준공 : '25.9. 개장 : '25.10.
16		장지천(송파)	장지교~탄천 합수부	수변정원, 황토맨발길	준공/개장 : '25.12.
17		여의천(서초)	양재천 합류부 인근	물놀이체험존, 전망카페	준공/개장 : '25.12.
18	'25년 이후 개 장 (10개소)	안양천(금천)	안양천동자전거길 1245일대	수변광장, 수변스탠드, 전망·놀이공간	준공/개장 : '26.6.
19		정릉천(동대문)	정릉천동로 83일대	스케이트보드장, 휴식공간	준공/개장 : '26.12.
20		우이천(노원)	노원구 월계동	수변카페 및 커뮤니티 시설	설계 : ~'25.5. 공사 : '25.6.~'26.4.
21		안양천(양천)	신목동역 3번출구	자전거쉼터, 수변테라스	설계 : ~'25.7. 공사 : '25.9.~'26.12.
22		성내천(송파)	신천동 21 일대	전망명소, 자전거 카페	설계 : ~'25.12. 공사 : '26.3.~'26.12.
23		중랑천(광진)	광진구 동일로 373	북카페, 다목적 휴게·공연공간	설계 : ~'25.9. 공사 : '25.12.~'26.11.
24		중랑천(도봉)	도봉동 86-1 일대	수변카페, 주민휴식공간	· '25.5.~'26.12.: - 하천점용허가 · '26.1.~'26.12.: - 공사시행
25		중랑천(동대문)	장안동 356일대	쉼터 및 야외공연장	
26		중랑천(성동)	송정동 75-88일대	수변카페, 다목적 커뮤니티	
27		안양천(영등포)	양평동 일대	카페·매점, 전망데크, 자연형호안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기업허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821호, 제2822호, 제2823호

다. 제출일자 : 2024.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202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A)				세입 수납액 (B)	세출 지출액 (C)	세계잉여금(이월액)(B-C)		
계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이월 예산			계	차기 이월	순세계 잉여금
1,076,528	851,824	92,022	132,682	1,154,243	875,237	279,006	116,805	162,201

가. 세입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A)	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정수율 (C/B)
					불납 결손액	미수금	
851,824	1,076,528	1,174,344	1,154,243	20,101	917	19,184	98.3%

나. 세출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A)	집행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지출액	이월액		
851,824	1,076,528	992,042	875,237	116,805	84,486	92.2%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간주처리)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전용,
 변경사용 등)

4. 결산 개요

가. 세 입 (결산서 p.204~207)

- 2024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1조 765억 28백만원의 109.1%인 1조 1,743억 4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8.3%인 1조 1,542억 43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은 201억 1백만원으로 그 중 9억 17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1억 8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계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이월 예산				불납 결손액	미수금	
1,076,528	851,824	92,022	132,682	1,174,344	1,154,243	20,101	917	19,184	98.3

- 하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징수결정액은 8,498억 67백만원임.
- 영업수익은 8,081억 21백만원임.
 - 사용료 수익 7,421억 70백만원
 - 기타영업수익 659억 50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417억 46백만원임.
 - 이자수익 108억 66백만원
 - 타회계전입금수익 277억 3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31억 77백만원

○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917억 95백만원임.

• 투자자산처분(대여금회수)	0원
•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 등)	452억 28백만원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억 67백만원
• 공사부담금수입	5억 89백만원
•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 미수금)	1,447억 12백만원
• 기타자본적수입	0원

○ 이월자금(이월재원충당금)은 1,326억 82백만원임.

○ 세입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징수율 (C/B)
합	계		1,076,528	1,174,344	1,154,243	917	19,184	98.3
하수도사업수익			774,443	849,867	835,585	-	14,282	98.3
영 업 수 익			740,588	808,121	793,939	-	14,181	98.2
		사 용 료 수 익	689,508	742,170	728,847	-	13,323	98.2
		기타영업수익	51,080	65,950	65,093	-	858	98.7
영 업 외 수 익			33,854	41,746	41,646	-	100	99.8
		이 자 수 익	3,651	10,866	10,866	-	-	100.0
		타회계전입금	27,704	27,703	27,703	-	-	100.0
		기타영업외수익	2,499	3,177	3,077	-	100	96.9
자 본 적 수 입			169,403	191,795	185,976	917	4,903	97.0
투 자 자 산 처 분			-	-	-	-	-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	-	-	-	-
유 형 자 산 처 분			-	-	-	-	-	-
		토 지	-	-	-	-	-	-
비 유 동 부 채 수 입			-	-	-	-	-	-
		기 타 비 유 동 부 채	-	-	-	-	-	-
자 본 잉 여 금 수 입			55,879	47,084	46,876	-	208	99.6
		시 설 분 담 금	53,345	45,227	45,020	-	208	99.5
		타회계건설보조금	1,192	1,267	1,267	-	-	100.0
		공 사 부 담 금	1,342	589	589	-	-	100.0
유 보 자 금			113,524	144,712	139,100	917	4,695	96.1
		순 세 계 잉 여 금	92,022	92,022	92,022	-	-	100.0
		미 수 금	21,502	52,689	47,078	917	4,695	89.4
기 타 자 본 적 수 입			-	-	-	-	-	-
		기 타 자 본 적 수 입	-	-	-	-	-	-
이 월 자 금			132,682	132,682	132,682	-	-	100.0
이 월 재 원 액			132,682	132,682	132,682	-	-	100.0

○ 전년도 대비 2024회계연도 과목별 세입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관	항	세항	2024년도		2023년도		증감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계	1,174,344	1,154,243	1,084,600	1,032,513	89,744	121,730
		하수도사업수익	849,867	835,585	820,373	772,153	29,494	64,432
		영 업 수 익	808,121	793,939	783,625	735,406	24,496	58,532
		사 용 료 수 익	742,170	728,847	730,654	683,286	11,516	45,561
		기타영업수익	65,950	65,093	52,971	52,120	12,979	12,972
		영 업 외 수 익	41,746	41,646	36,748	36,746	4,998	4,900
		이 자 수 익	10,866	10,866	9,177	9,177	1,689	1,689
		타회계전입금	27,703	27,703	24,653	24,652	3,050	3,051
		기타영업외수익	3,177	3,077	2,919	2,917	258	160
		자 본 적 수 입	191,795	185,976	170,569	166,702	21,226	19,274
		투 자 자 산 처 분			43,000	43,000	△43,000	△43,000
		대여금회수수입			43,000	43,000	△43,000	△43,000
		유 형 자 산 처 분			-	-	-	-
		토 지			-	-	-	-
		비 유 동 부 채 수 입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자본잉여금수입	47,084	46,876	50,367	49,942	△3,283	△3,066
		시 설 분 담 금	45,227	45,020	49,068	48,644	△3,841	△3,624
		타회계건설보조금	1,267	1,267	144	144	1,123	1,123
		공 사 부 담 금	589	589	1,155	1,155	△566	△566
		유 보 자 금	144,712	139,100	77,202	73,760	67,510	65,340
		순세계잉여금	92,022	92,022	27,514	27,514	64,508	64,508
		미 수 금	52,689	47,078	49,688	46,246	3,001	832
		이 월 재 원 수 입	132,682	132,682	93,657	93,657	39,025	39,025
		현금이월재원액 (전년도 사고이월액)	132,682	132,682	93,657	93,657	39,025	39,025

나. 세 출 (결산서 p.208~313)

- 2024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8,518억 23백만원임.
- 집행액은 9,920억 42백만원으로 이중 8,752억 37백만원을 지출하고 1,168억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2%임.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844억 86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예산액	추경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2024	1,076,528	851,823	92,022	132,682	992,042	875,237	116,805	84,486	92.2
2023	1,007,442	886,400	27,384	93,658	940,491	807,809	132,682	66,951	93.4
증감	69,086	△34,577	64,638	39,024	51,551	67,428	△15,877	17,535	△1.2

□ 예비비 (결산서 p.368~369)

- 예비비 예산액은 6억 35백만원으로서 1억 53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음.
 - 지출된 1억 53백만원은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 1억 53백만원을 지출한 것임.

□ 이월 (결산서 p.370~413)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등 82건, 1,168억 5백만원임.

- 건설개량이월¹⁾은 20건, 192억 62백만원

- 사고이월은 89건, 975억 43백만원

○ 건설개량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율(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시설비)	32억 29백만원	94.9%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감리비)	1억원	100.0%
영등포, 신길펌프장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시설비)	34억원	89.4%
대치역 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시설비)	28억 4백만원	90.4%
대치역 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감리비)	1억원	100.0%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시설비)	29억 22백만원	94.2%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감리비)	1억원	100.0%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시설비)	20억원	54.3%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감리비)	3억원	81.2%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시설비)	5억 15백만원	19.8%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감리비)	2억 23백만원	42.6%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시설관리비)	7백만원	100.0%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시설비)	5억 11백만원	39.1%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감리비)	3억원	76.9%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시설관리비)	50백만원	100.0%
탄천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설비)	4억 60백만원	100.0%
난지물재생센터 주전기실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설비)	3억원	100.0%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시설비)	2억 5백만원	11.5%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시설비)	4억 41백만원	7.1%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시설비)	12억 94백만원	32.1%

1)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함

○ 건설개량이월 원인 및 이월액 대비 비율

· 사전절차지연(14건)	126억 69백만원	(65.8%)
· 유관사업지연(1건)	2억 5백만원	(1.1%)
· 사업계획변경(2건)	29억 4백만원	(15.1%)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2건)	30억 23백만원	(15.7%)
· 기타(1건)	4억 60백만원	(2.3%)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공공운영비)	72백만원	(22.9%)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전산개발비)	23억 91백만원	(20.9%)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시설비)	1억 40백만원	(14.7%)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연구용역비)	2억 52백만원	(14.9%)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 결산감사(사무관리비)	21백만원	(35.9%)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감리비)	1억 12백만원	(1.6%)
하수도 약취 저감 추진(시설비)	9억 95백만원	(21.5%)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전산개발비)	67백만원	(17.7%)
하수도 정확도 개선 불탐구간 해소(시설비)	4억 37백만원	(29.1%)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설비)	10억원	(50.0%)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시설비)	101억 43백만원	(36.5%)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감리비)	96백만원	(11.3%)
하수관로 수위계 설치(시설비)	37백만원	(2.3%)
대방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확장(시설비)	1억 33백만원	(29.5%)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시설비)	1억 37백만원	(39.1%)

대림로 211~157 하수관로 이설(시설비)	14억 65백만원 (86.1%)
대동초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시설비)	1억 72백만원 (20.1%)
흑석한강로 2 일대 하수관로 개량(시설비)	7억 90백만원 (94.0%)
논현로 79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시설비)	5억원 (55.9%)
기술진단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시설비)	17억 94백만원 (44.8%)
도림천 CSOs간이처리시설 설치(시설비)	30억원 (100.0%)
도림천 CSOs간이처리시설 설치(감리비)	5억원 (100.0%)
대치역 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시설비)	2억96백만원 (9.5%)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시설비)	1억 77백만원 (5.7%)
대림2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시설비)	11억 28백만원 (75.1%)
취약지역 우수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1억 70백만원 (33.9%)
분류식지역 우수간선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2억 73백만원 (34.1%)
시루봉로 149-21 주변 하수관로 개량(시설비)	4억 92백만원 (95.7%)
삼성2동(선정릉 일대) 노후 하수관 정비(시설비)	1억 32백만원 (43.8%)
일원로 3길 87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시설비)	5억 46백만원 (54.6%)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19억 40백만원 (16.2%)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96백만원 (7.7%)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8억 51백만원 (6.4%)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51백만원 (4.6%)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29억 71백만원 (39.2%)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5억 96백만원 (48.1%)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16억 76백만원 (30.5%)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13백만원	(2.1%)
남가좌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16억 28백만원	(22.2%)
남가좌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96백만원	(7.1%)
방화1-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8억 75백만원	(24.7%)
용산-2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22억 72백만원	(59.9%)
용산-2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5억 2백만원	(66.9%)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8억 70백만원	(42.9%)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21백만원	(14.2%)
상계1-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27억 35백만원	(72.1%)
상계1-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3억원	(40.0%)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29억 4백만원	(63.1%)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6억 50백만원	(65.0%)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30억 28백만원	(61.2%)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4억 26백만원	(50.0%)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28억 33백만원	(58.3%)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7억 81백만원	(64.6%)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34억 88백만원	(98.3%)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1억원	(100.0%)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34억 2백만원	(69.5%)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5억 13백만원	(73.2%)
방학-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7억 31백만원	(15.8%)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17억 20백만원	(49.9%)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1억 80백만원	(30.0%)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16억 67백만원 (24.4%)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3억원 (50.0%)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30억 32백만원 (52.1%)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1억 1백만원 (22.5%)
불광 1-1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94백만원 (13.2%)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1억 39백만원 (10.5%)
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1억 15백만원 (8.4%)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1억 20백만원 (25.0%)
흑석-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2억 12백만원 (55.8%)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3억 25백만원 (50.0%)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4억 35백만원 (50.0%)
탄천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시설비)	9억 88백만원 (56.0%)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시설비)	7억 3백만원 (19.0%)
차집관로 성능개선(시설비)	35억 68백만원 (43.1%)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 시범사업(시설비)	23억 14백만원 (84.4%)
물재생센터 유입펌프 효율측정 용역 및 성능개선(시설비)	66백만원 (16.4%)
차집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서남.탄천) (전산개발비)	2억 92백만원 (27.3%)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시설비)	14억 56백만원 (82.0%)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 활성화 용역(시설비)	2억 92백만원 (97.1%)
토목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	7억 57백만원 (16.8%)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시설비)	5억 45백만원 (21.9%)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시설비)	2억 58백만원 (3.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재료비)	6억 34백만원 (10.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시설비)	15억 1백만원 (10.1%)
차집관로 보수공사(시설비)	41억 1백만원 (32.4%)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시설비)	36억 24백만원 (30.2%)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시설비)	12억 97백만원 (21.0%)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시설비)	21억 86백만원 (54.2%)
분뇨·탈수분야 유지보수 및 개량(시설비)	7억 70백만원 (79.4%)

○ 사고이월 원인 및 이월액 대비 비율

·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10건)	203억 31백만원 (20.8%)
· 사전절차지연(15건)	166억 33백만원 (17.1%)
· 유관사업지연(7건)	62억 89백만원 (6.4%)
· 사업계획변경(9건)	71억 45백만원 (7.3%)
· 관급 및 외자재 구매 지원(1건)	30억 28백만원 (3.1%)
· 준공기한 미도래(44건)	387억 56백만원 (39.7%)
· 기타(3건)	53억 61백만원 (5.5%)

□ 전용 (결산서 p.414~415)

- 예산전용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 1건, 1억 57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1건		13,404	157	△157	
1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3,184		△157	2024.9.29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	220	157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중량물재생센터 운영”등 총 5건, 20억 7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5건		52,072	2,007	△2,007	
1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재료비)	7,084		△1,600	2024.9.27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시설비)	17,446	1,600		
2	인력운영비(국민건강보험부담금)	191		△2	2024.3.27
	인력운영비(보수)	5,011	2		
3	인력운영비(중량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보험료부담금)	214		△50	2024.10.21
	인력운영비(중량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보수)	469	50		
4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시설비)	10,712		△15	2024. 5. 9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감리비)	447	15		
5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1,100		△339	2024.12.12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9,400	339		

□ 불용 (결산서 p.208~313)

○ 집행잔액(불용액)은 844억 8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9%임.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159억 19백만원	(1.8%)
- 낙찰차액	141억 86백만원	(23.2%)
- 지출잔액	538억 98백만원	(74.7%)
- 예비비 잔액	4억 82백만원	(0.2%)
합 계	844억 85백만원	(100%)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방배로 474-20일대 사각형거 이설” 등 14건으로 다음과 같음.

<불용 사업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현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계	33,007	15,918	
방배로 474-20일대 사각형거 이설(시설비)	1,007	417	공사 진행 중 주민민원 발생 및 지하철 노선 저축에 따른 협의 지연에 따른 불용액 발생
월곡로 2 성북중앙교회 사각형거 이설(시설비)	780	507	성북중앙교회 민원로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재협의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용처리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5,869	3,528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 중 재개발 구역 인근 하수관로 사업제외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793	303	
신촌-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3,462	2,575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 중 지장물 간섭, 도로굴착통제, 사유지 구간 제외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시설비)	3,683	19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반려로 사업 일시중지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감리비)	369	51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시설비)	2,596	208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반려로 사업 일시중지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감리비)	523	283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시설비)	1,306	712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신청 반려 사업 일시중지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감리비)	390	90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시설비)	3,640	3,640	난지 민간투자, 지하화계획 결정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우려로 미집행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감리비)	300	300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시설비)	8,289	1,241	공기 부족 및 후속공정 지연으로 집행부진

□ 세출 결산 세부내역 (결산서 p.208~313)

(단위: 백만원, %)

구분	정책	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합계			1,076,528	963,585	875,237	116,805	84,486	92.2
수익적지출			551,157	516,219	499,534	16,881	32,837	93.7
		하수시설관리(사업)	79,801	77,684	72,020	5,363	2,418	97.0
		하수도관리(사업)	17,702	16,898	12,605	4,375	721	95.9
		하수관로 신설개량(사업)	46,322	45,798	45,448	-	874	98.1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15,778	14,987	13,967	988	823	94.8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194,345	180,864	180,506	357	13,482	93.1
		물재생시설 개선 (사업)	1,063	1,043	751	292	20	98.1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사업)	193,283	179,821	179,755	66	13,462	93.0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06,382	103,694	102,572	1,302	2,508	97.6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사업)	62,068	60,992	60,992	-	1,076	98.3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	12,080	11,108	9,986	1,302	792	93.4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사업)	5,160	5,068	5,068	-	92	98.2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사업)	3,520	3,426	3,426	-	94	97.3
		중량물재생센터 관리대행(사업)	23,554	23,099	23,099	-	455	98.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74,199	64,635	54,776	9,859	9,563	87.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사업)	38,929	30,254	28,119	2,135	8,675	77.7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	17,040	16,471	8,747	7,724	569	96.7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사업)	1,930	1,711	1,711	-	220	88.7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사업)	700	601	601	-	99	85.9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사업)	200	200	200	-	-	100.0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15,400	15,399	15,399	-	1	100.0
		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6,818	5,993	5,993	-	825	87.9
		인력운영비	6,537	5,772	5,772	-	765	88.3
		기본경비	281	221	221	-	59	78.6

(단위: 백만원, %)

구분	정책	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행정운영경비(물재생시설과)	65	57	57	-	8	87.7
		기본경비(물재생시설과)	65	57	57	-	8	87.7
		행정운영경비(중량물재생센터)	15,463	14,411	14,411	-	1,052	93.2
		인력운영비(중량물재생센터)	15,008	14,044	14,044	-	964	93.6
		기본경비(중량물재생센터)	455	367	367	-	88	80.7
		행정운영경비(난지물재생센터)	11,959	10,797	10,797	-	1,162	90.3
		인력운영비(난지물재생센터)	11,574	10,471	10,471	-	1,103	90.5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385	326	326	-	59	84.7
		재무활동	22,000	22,000	22,000	-	-	100.0
		내부거래지출(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2,000	22,000	22,000	-	-	100.0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사업예산)	696	696	696	-	-	100.0
		보전지출(위탁금 상계처리비 반환)	696	696	696	-	-	100.0
		예비비(사업)	-	-	-	-	-	-
		예비비	-	-	-	-	-	-
자 본 적 지 출			409,891	352,330	279,233	109,825	20,833	94.9
		하수시설관리(자본)	291,655	253,948	201,597	74,052	16,006	94.5
		하수도관리(자본)	7,499	7,173	6,898	250	351	95.3
		하수관로 신설개량(자본)	130,722	119,309	108,893	12,455	9,374	92.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14,268	94,002	52,904	60,824	539	99.5
		하수관로 보수보강(자본)	39,167	33,464	32,902	523	5,742	85.3

(단위: 백만원, %)

구분	정액	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응액 (A-(C+D))	집행율 ((C+D)/A)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57,692	43,128	24,673	31,510	1,509	97.4
		물재생시설 개선 (자본)	41,785	31,976	13,520	27,570	695	98.3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자본)	15,906	11,153	11,153	3,940	813	94.9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5,840	14,594	13,732	1,323	785	95.0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자본)	208	186	186	-	22	89.4
		중량물재생센터 공동분야 유지보수(자본)	3,090	2,854	2,854	-	236	92.4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자본)	9,366	8,865	8,317	734	315	96.6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3,177	2,689	2,376	589	212	93.3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22,981	19,261	17,833	2,941	2,208	90.4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자본)	271	265	265	-	6	97.8
		난지물재생센터 공동분야 유지보수(자본)	700	689	670	19	11	98.4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자본)	16,160	13,751	12,361	1,742	2,057	87.3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3,410	2,130	2,112	1,179	119	96.5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2,440	2,426	2,426	-	14	99.4
		재무활동	20,700	20,543	20,543	-	157	99.2
		내부거래지출	20,700	20,543	20,543	-	157	99.2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855	855	855	-	-	100.0
		내부거래지출(물재생시설과)	855	855	855	-	-	100.0
		예비비(자본)	167	-	-	-	167	-
		예비비	167	-	-	-	167	-

(단위: 백만원, %)

구분	정액	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이 월 예 산 지 출			93,658	89,551	88,802	780	4,075	95.6
		하수시설관리(사업)	5,418	5,347	5,344	-	74	98.6
		하수도관리(사업)	3,053	3,018	3,015	-	37	98.8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2,365	2,329	2,329	-	37	98.5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6,195	6,150	6,150	-	45	99.3
		중량물재생센터 공동분야 유지보수(사업)	4,281	4,281	4,281	-	-	100.0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사업)	832	832	832	-	-	100.0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사업)	1,083	1,037	1,037	-	45	95.8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1,454	11,244	11,244	-	210	98.2
		난지물재생센터 공동분야 유지보수(사업)	11,454	11,244	11,244	-	210	98.2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772	1,770	1,770	-	2	99.9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자본)	525	523	523	-	2	99.6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1,247	1,247	1,247	-	-	100.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0,652	10,137	9,528	-	1,124	89.4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자본)	165	164	164	-	1	99.4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자본)	6,636	6,341	5,731	-	905	86.4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3,054	2,859	2,859	-	195	93.6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자본)	797	774	774	-	23	97.1
		하수시설관리(자본)	30,320	27,847	27,710	780	1,829	94.0
		하수관로 신설개량(자본)	14,954	12,979	12,875	780	1,299	91.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3,727	13,313	13,313	-	415	97.0
		하수관로 보수보강(자본)	531	531	498	-	33	93.8
		하수관로 종합정비	1,108	1,025	1,025	-	83	92.5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27,845	27,055	27,055	-	790	97.2
		물재생시설 개선 (자본)	27,845	27,055	27,055	-	790	97.2

□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정책사업	2024년도		2023년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합 계		1,076,528	875,237	1,007,442	807,809	69,086	67,428
수 익 적 지 출		513,254	499,534	503,893	439,774	9,361	59,760
	하수시설관리(사업)	79,801	72,020	94,411	81,973	△14,610	△9,953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194,345	180,506	183,894	164,391	10,451	16,115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06,382	102,572	107,916	93,725	△1,534	8,84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74,199	54,776	61,273	46,111	12,926	8,665
	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6,818	5,993	6,215	5,612	603	381
	행정운영경비(물재생시설과)	73	61	65	57	8	4
	행정운영경비(중량물재생센터)	16,318	14,572	15,463	14,411	855	161
	행정운영경비(난지물재생센터)	12,898	10,962	11,959	10,797	939	165
	재무활동	22,000	22,000	22,000	22,000	-	-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사업예산)	74	73	696	696	△622	△623
	예비비(사업)	347	-	-	-	347	-
자 본 적 지 출		430,591	301,661	409,891	279,233	115,479	96,497
	하수시설관리(자본)	321,485	226,189	291,655	201,597	29,830	24,592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63,321	37,338	57,692	24,673	5,629	12,665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8,413	17,193	15,840	13,732	2,5733	3,46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9,961	3,667	22,981	17,833	△13,020	△14,166
	재무활동	15,827	15,825	20,700	20,543	△4,873	△4,718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1,450	1,449	855	855	595	594
	예비비(자본)	135	-	167	-	△32	-
이 월 예 산 지 출		132,682	110,041	93,658	88,802	39,024	21,239
	하수시설관리(사업)	5,067	4,970	5,418	5,344	△351	△374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6,075	4,824	6,195	6,150	△120	△1,326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9,973	9,395	11,454	11,244	1,481	1,849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961	961	-	-	961	961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323	1,029	1,772	1,770	△449	△74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2,941	1,741	10,652	9,528	△7,711	△7,748
	하수시설관리(자본)	74,833	65,043	30,320	27,710	44,513	37,333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31,510	22,077	27,845	27,055	3,665	△4,978

다.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재무상태표 (결산서 p.107~108)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은 7조 307억 39백만원임.
- 자본은 7조 220억 48백만원으로 자기자본비율²⁾은 99.9%임.
- 부채³⁾는 86억 91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0.1%임.
- 2024년도말 기준 채무⁴⁾는 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24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10,175	8,148	9,632		8,691
채 무		-	-	-	-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109)

- 2024회계연도에서는 △656억 13백만원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음.

(단위: 백만원)

당기순이익(A)								
총계 (A=B+C)	영업손익(B)					영업외손익(C)		
	계 (B=D-G)	매출손익(D)			판매비와 관리비(G)	계 (C=G+H)	영업외수익 (G)	영업외비용 (H)
		소계 (D=E-F)	매출액 (E)	매출원가 (F)				
△65,613	△312,356	△279,156	808,121	1,087,277	33,200	246,744	247,803	1,059

※ 당기순이익(손실) = 영업손익+영업외손익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산서 p.110)

- 2024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과 일치함.

2)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100

3) 부채는 회계학 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4) 채무액은 시재정투융자기금+유동성 장기부채를 말함.

5. 검토 의견

가.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조 1,542억 43백만원, 지출액은 8,752억 37백만원임.
-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790억 6백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액⁵⁾ 192억 62백만원, 사고이월액 975억 4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2억 1백만원임.

[표]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세계잉여금(B-C)		
	계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월예산			계	이월	순세계 잉여금
2024년도	1,076,528	851,824	92,022	132,682	1,154,243	875,237	279,006	116,805	162,201
2023년도	1,007,442	886,400	27,384	93,658	1,032,513	807,809	224,704	132,682	92,022
2022년도	1,034,081	865,408	71,989	96,684	956,597	835,425	121,172	93,658	27,514

- 순세계잉여금(1,622억 1백만원)은 수납액의 약 24.1%에 해당함.
-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1조 559억 23백만원, 총비용은 1조 1,215억 36백원으로 당기순이익(손실)은 △656억 13백만원임.

[표]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당기순이익 (손실)	△65,613	△46,027	763	25,863	18,599	122,515

5)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함

- 현재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2023회계연도 당기순손실 460억 27백만원 대비 195억 86백만원의 추가적인 손실(656억 13백만원)이 발생하여 2년 연속 적자 운용되고 있는 실정⁶⁾으로,
 - 이는 매출원가가 '23년(1조 231억원) 대비 642억원이 증가(1조 873억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하수도시설의 노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 매출원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음.

[표] 손익계산서 요약(2024~2023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차액	비고
매출액(A)	808,121	783,625	24,496	사용료수익, 분뇨처리, 타시도 하수처리 등 기타영업수익의 징수결정액
매출원가(B)	1,087,277	1,023,068	64,209	하수관로 운영유지비, 물재생센터 운영유지비 및 건축물(관로),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
매출총손실(C=A-B)	△279,156	△239,443	△39,713	
판매비와관리비(D)	33,200	32,546	654	일반관리비, 공기구비품 등 감가상각비
영업손실(E=C-D)	△312,356	△271,989	△40,367	
영업외수익(E)	247,802	△271,989	21,144	이자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유형자산 처분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
영업외비용(F)	1,059	696	363	유형자산폐기손실, 기타영업외비용 등
당기순이익(G=E-F)	△65,613	△46,027	△19,586	
총수익	1,055,923	1,010,283	45,640	매출액(A)+영업외수익(E)
총비용	1,121,536	1,056,310	△65,226	매출원가(B)+판매비와관리비(D)+영업외비용(G)
당기순이익	△65,613	△46,027	△19,586	

6) ■ 당기순이익 : 1,225억('19년) → 196억('20년) → 259억('21년) → 8억('22년) → △460억('23년) → △656억('24년)

나. 세입 결산 (결산서 p.204~207)

- 2024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65억 28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1,743억 44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1조 1,542억 4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98.3%)임.

[표]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2024년	1,076,528	1,174,344	1,154,243	20,101	917	19,184	98.3
2023년	1,007,442	1,084,600	1,032,513	52,086	209	51,877	95.2
2022년	1,034,081	1,008,828	956,597	52,213	218	52,013	94.8
증 감 (’22년 대비)	42,447	165,516	197,646	△32,112	699	32,829	3.5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내역의 경우 시효 소멸⁷⁾ 9억 1백만원과 기타(무재산, 착오부과 등) 1천 5백만원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차년도 이월액의 경우 191억 85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차년도 이월액 중 미수납액 사유는 “무재산(6억 78백만원), 납세태만(26억 3백만원)” 및 “자금압박(129억 84백만원)”과 “기타(13억 87백만원)” 등이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납세태만’은 납부할 여력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조사해 압류 조치하는 한편,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 부

7) 시효소멸의 법적근거(「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표] 공기업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미수납액		20,101
결손처분		916
	시효소멸	901
	기타(무재산, 착오부과 등)	15
차년도 이월액		19,185
	무재산	678
	행방불명	0
	납세태만	2,603
	폐업 또는 부도	1,533
	국외이주	0
	자금압박	12,984
	기타(납기미도래, 폐업 또는 부도 등)	1,387

다. 세출 결산 (결산서 p.208~313)

1) 총괄

- 2024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65억 28백만원임.
- 집행액은 9,920억 42백만원으로 이 중 8,752억 37백만원을 지출하고 1,168억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2%임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844억 86백만원임.

[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예산액	추경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변 경 사 용	예산현액 (A)	집행액		불용액 (A-(B+C))	집행률 (B+C)/A
							지출액 (B)	이월액 (C)		
2024	851,824	92,022	132,682	157 △157	2,007 △2,007	1,076,528	875,237	116,805	84,486	92.2
2023	886,400	27,385	93,658	371 △371	2,107 △2,107	1,007,442	807,809	132,682	66,951	93.4
2022	865,408	71,989	96,684	16 △16	693 △693	1,034,081	835,425	93,658	104,998	89.9
증 감	△13,584	20,033	35,998	141 △141	1,314 △1,314	42,447	39,812	23,147	△20,512	2.3

2) 예비비 지출 (결산서 p.368~369)

- 예비비⁸⁾는 세출 예산현액의 0.06% 수준인 6억 3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억 5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음.

8)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표]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		2023년		2022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635	153	867	700	1,399	850

- 지출된 1억 53백만원은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 1억 53백만원을 지출한 것임.

[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사용 일자
	정책	단위	세부	목	세목		감	증		
예비비	사업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 예비비	153	153		0	'24.10.14
소송 판결금 지급	물재생시설개선및 관리 (사업)	물재생 시설 (개선)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공사대금 판결금 납부	배상금 등	배상금 등	153		153		'24.10.30.

- 이는 '21.07. 준공된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공사 (장기계속)”의 계약상대자인 백상건설(주) 외 1개사가 '21.12.23.일 제기한 추가 공사대금 소송이 '24.08.30.일 종결⁹⁾ 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판결금을 지급한 것임.

3) 예산이월 (결산서 p.370~413)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

9) 서울시 일부 80% 승소 및 판결금 1억 53백만원

장 신설 및 배수개선」 등 총 109건, 1,168억 5백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12.3%임.

[표] 예산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109	116,805	24	33,000	15	16,633	8	6,494	11	10,049	46	41,779	5	8,849
2023	111	132,682	15	28,665	33	50,906	4	4,706	10	15,959	32	14,182	17	18,263
2022	67	93,658	14	36,653	34	41,117	-	-	-	-	-	-	19	15,888
증감	42	23,194	10	△3,653	△19	△24,484	8	6,494	11	10,049	46	41,779	△14	△7,039

-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417억 79백만원(46건, 35.8%),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330억원(24건, 28.2%),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지연 231억 27백만원(23건, 19.8%), 사업계획 변경 100억 49백만원(11건, 8.6%), 기타 88억 49백만원(5건, 7.6%)에 해당됨.

[표]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24	
	건수	이월액(%)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24	33,000(28.2%)
사전절차지연	15	16,633(14.2%)
유관사업지연	8	6,494(5.6%)
사업계획변경	11	10,049(8.6%)
준공기한 미도래	46	41,779(35.8%)
기타	5	8,849(7.6%)
계	109	116,805(100.0%)

- 이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 유
1	물재생 계획과	기술진단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4,000	1,794	612	45%	준공기한 미도래
2	물재생 계획과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060	3,614	167	60%	준공기한 미도래
3	물재생 계획과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176	892	165	41%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
4	물재생 계획과	대림로 211~157 하수관로 이설	1,700	1,465	149	86%	유관사업지연
5	물재생 계획과	대림2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	1,600	1,127	145	70%	사전절차 지연
6	물재생 계획과	탄천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761	988	131	56%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
7	물재생 계획과	분류식지역 오수간선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800	273	116	34%	사전절차 지연
8	물재생 계획과	일원로 3길 87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1,000	546	95	55%	사전절차 지연
9	물재생 계획과	취약지역 우수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0	170	76	34%	유관사업 지연
10	물재생 계획과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44	1,900	56	47%	준공기한 미도래
11	물재생 계획과	논현로 79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894	500	35	56%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
12	물재생 계획과	대방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확장	450	133	17	30%	유관사업지연
13	물재생 계획과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 결산감사	59	21	9	36%	준공기한 미도래
14	물재생 계획과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595	3,916	8	70%	사전절차 지연
15	물재생 계획과	흑석한강로 2 일대 하수관로 개량	840	790	6	94%	사업계획변경
16	물재생 계획과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260	3,132	5	50%	준공기한 미도래
17	물재생 계획과	용산-2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542	2,775	4	61%	준공기한 미도래
18	물재생 계획과	상계1-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541	3,035	-	67%	준공기한 미도래
19	물재생 계획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	1,000	-	50%	준공기한 미도래
20	물재생 계획과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28,585	10,239	-	36%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21	물재생 계획과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	350	137	-	39%	준공기한 미도래

연 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 유
22	물재생 계획과	도림천 CSOs간이처리시설 설치	3,500	3,500	-	100%	준공기한 미도래
23	물재생 계획과	시루봉로 149-21 주변 하수관로 개량	514	492	-	96%	사전절차지연
24	물재생 계획과	삼성2동(선정릉 일대) 노후 하수관 정비	300	132	-	44%	준공기한 미도래
25	물재생 계획과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809	3,567	-	40%	준공기한 미도래
26	물재생 계획과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600	3,554	-	63%	준공기한 미도래
27	물재생 계획과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791	3,454	-	60%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28	물재생 계획과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648	3,588	-	98%	사전절차지연
29	물재생 계획과	흑석-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80	212	-	56%	준공기한 미도래
30	물재생 계획과	길동-5-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50	325	-	50%	준공기한 미도래
31	물재생 계획과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70	435	-	50%	준공기한 미도래
32	물재생 시설과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 시범사업	2,740	2,314	364	84%	유관사업지연
33	물재생 시설과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	1,774	1,455	45	82%	유관사업지연
34	물재생 시설과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 활성화 용역	300	293	9	97%	준공기한 미도래
35	난지물 재향센터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11,984	3,623	879	30%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36	난지물 재향센터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4,029	2,186	328	54%	사전절차지연
37	난지물 재향센터	분뇨·탈수분야 유지보수 및 개량	890	707	106	79%	사전절차지연
38	난지물 재향센터	차집관로 보수공사	12,641	4,102	102	32%	준공기한 미도래

○ ‘대방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확장’ 사업은 동작구 대방동 대방 빗물펌프장으로 유입하는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를 확관·신설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억 5천만원 대비 30%인 1억 3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공사 중 지장물(도시가스) 저촉에 따른 이설 공사를 선

행10)할 필요가 있고, 사업지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공사 자재 적치, 공사에 따른 통행 불편)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 현장 지장물에 대한 사전 조사와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는바,
 -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도 지장물 이설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업 지연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 여겨지는바,
 - 시는 지장물을 관성적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정확도 및 신뢰도 높은 지하 지장물 탐사기술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은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고품질(통수능, 이송능력, 악취저감 등) 관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표]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 유
1	물재생 계획과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595	3,916	8	70%	○ 상반기 설계용역 중 설계심의, 공기 적정성 검토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하 반기 공사 발주 후 동절기 공사 중 지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차 분 준공기한이 2025.09.30.까지 연 기 되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 로 해당 사업예산 이월이 불가피함
2	물재생 계획과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791	3,454	-	60%	○ 조달청 레진관 관급자재 계약 및 수 급 지연, 구경 확대 공사구간 내 저층 지장물 이설 협의 등의 사유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 연기
3	물재생 계획과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648	3,588	-	98%	○ 서울시 협의 지연 및 설계 보완사 항 반영 등 설계 지연 등으로 공 사 발주가 지연되었으며, 계약기간 이 '24.12.~'26.12.인 장기계속 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의해 미집행잔액 사고이월 필요

- 먼저, 가락-3 소구역은 설계용역 중 설계심의, 공기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면서 '24.8월이 되어야 공사가 착공되었고, 이에 준공기한('25.9월) 미도래로 미집행 잔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 구로1-1 소구역은 공사구간 내 지장물(가스관, 상수도) 이설공사 협의에 기간이 소요되고, 조달청의 관급자재 계약 절차가 늦어지면서 '24.11월이 되어야 자재가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된 것이 사고이월의 주요 원인임.
- 도림2-6 소구역은 자치구와 시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를 추가하게 되면서 관련 보고서 작성과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에 기간이 소요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을 당초 '24.6월에서 '25.12월로 변경하고 공사비를 사고이월한 것임.

- 동 사업들은 사전절차, 지장물 이설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사전에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보이는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장애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흑석한강로 2 일대 하수관로 개량’ 및 ‘시루봉로 149-21 주변 하수관로 개량’ 사업은 하수관로 통수능 확보 및 노후불량 관로 정비를 통한 배수성능 향상 및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금회 아래의 [표]와 같이 사고이월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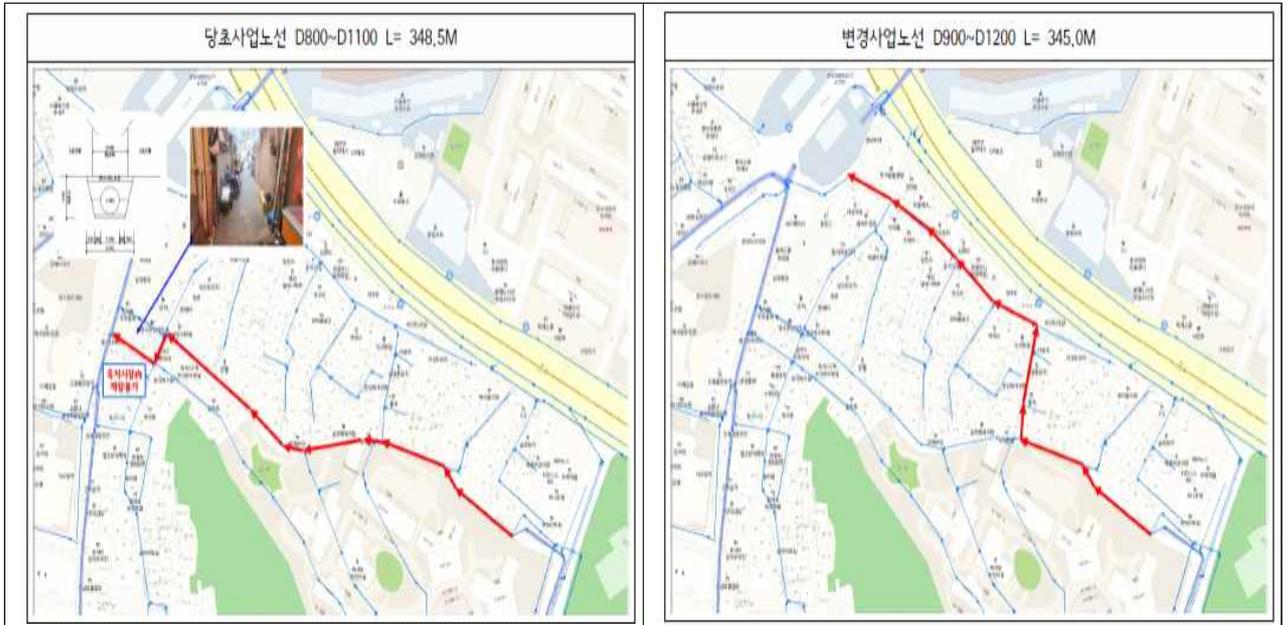
[표] ‘흑석한강로 2 일대 하수관로 개량’ 외 1개 사업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 유
1	물재생 계획과	흑석한강로 2 일대 하수관로 개량	840	790	6	94	○ 당초 계획된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금액과 기간이 증가하였고, 계약기간이 '24.11.~'25.12.인 장기 계속 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의해 집행잔액 사고이월 필요
2	물재생 계획과	시루봉로 149-21 주변 하수관로 개량	514	492	-	96	○ 공사구간 중 사유지 사용 협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용역 등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며 동절기 공사품질 저하 우려로 준공기한 연기

- 먼저, ‘흑석한강로 2 일대 하수관로 개량’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 흑석시장 내 관로 확관이 필요한 구간 중 일부가 민간 건축물 2개소와 저촉¹¹⁾되어 유로 변경 검토가 필요하여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공사가 '24.10월이 되어서야 발주됨에 따라 공사비를 사고이월한 것임.

11) 흑석한강로2 일대 하수관로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연기 요청, 에이스톤엔지니어링(주), 2024.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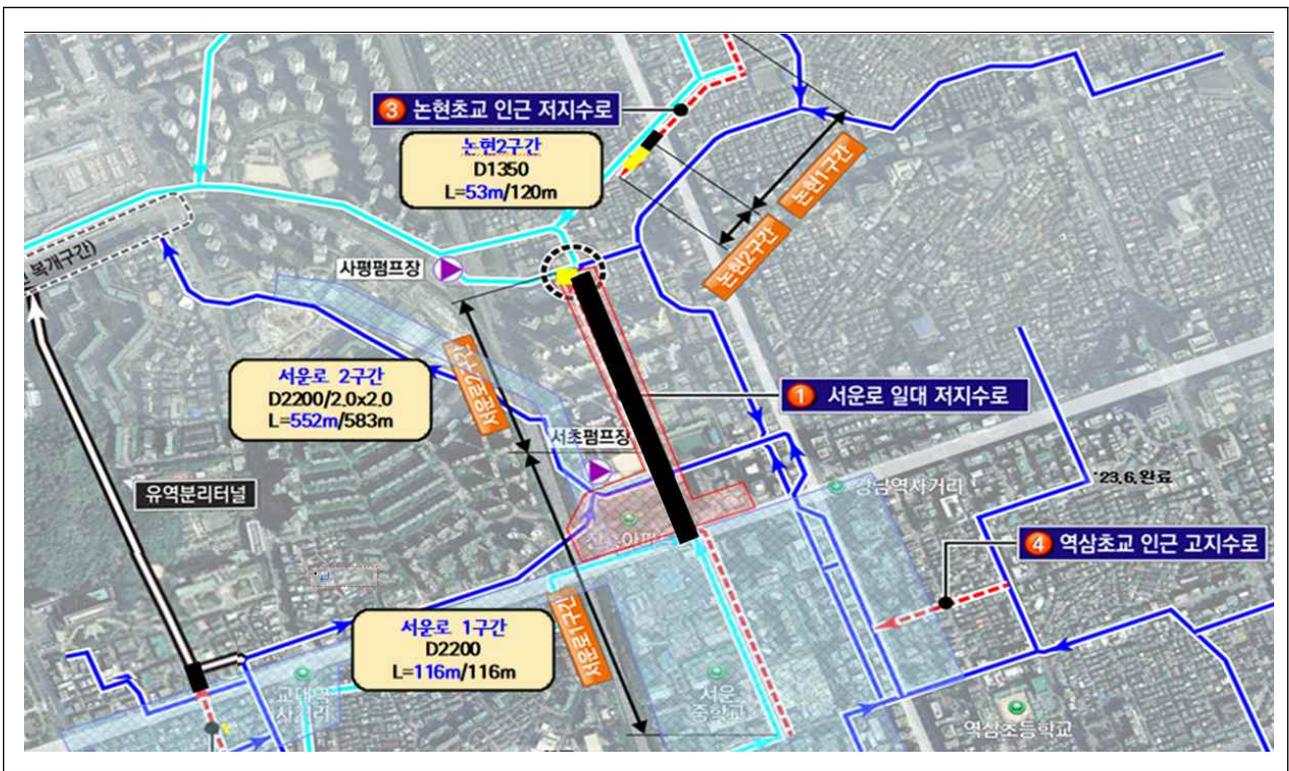


[그림] '흑석한강로 2 일대 하수관로 개량' 사업구간 변경 노선도

- 다음으로, '시루봉로 149-21 주변 하수관로 개량' 사업은 사업대상지 인근 노후아파트('86년 준공) 주민이 굴착공사에 따른 안정성 우려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 용역을 추가 시행한 것과 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한 것임.
- 동 사업들 역시 현장여건 조사와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는바, 실시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사업은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사업의 일환으로 통수능이 부족한 서운로 일대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강남역 주변 4개 구간(서운로, 교대역 주변, 논현초교앞)에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285억 85백만원 대비 36%인 102억 3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공사 추진 중 서운로 2구간(사평대로 횡단)에서 지장물(상수관 D900mm, 도시가스)이 저촉됨에 따른 이설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공사기간 및 공사비 소요, 단수 및 교통정체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어려워 사고이월하게 된 것으로,



[그림] 지장물 저촉구간 위치도

- 이 역시 설계과정에서 현장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는바, 설계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할 것임.

- ‘도립천 CSOs간이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도립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강우 시 차집관로 용량을 초과하여 하천으로 월류되는 오염물질을 하천토구형 CSOs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5억원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23.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24년부터는 소관 자치구(영등포구, 관악구)에서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수방기간 (매년 5.15.~10.15.) 동안 공사 추진에 제약이 있었고, 신기술 특허 기업과의 수의계약이 조달청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24.12월 이 되어서야 협의가 완료되어 예산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 수방기간이라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기간인 만큼 당초에 이를 고려하여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고, 신기술 업체와 수의계약이 필요했다면 이에 대한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추진할 수 있는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추후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 시범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에 데이터 기반의 자동운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능형 시스템 구축과 노후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27억 4천만원 대비 84%인 23억 1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24년도에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25년도에는 지능형 SW를 도입하여 '2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 '24.2.1.일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동년 2.26.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PIMAC KDI 공공투자관리센터)하였고,
- 이에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지능형 시스템의 철거가 예상되어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24년도에는 노후시설 개선¹²⁾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용역 후 '24.12월에서야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사고이월한 것임.

■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 개요

- 사업위치 : 난지물재생센터 내
- 사업규모 : 난지물재생센터 전면 지하화, 상부 주민친화공간 조성
 - 하수처리시설 68만m³/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40만m³/일
 - 건조시설 410톤/일, 분뇨처리시설 4,500kl/일 등
- 총사업비 : 17,070억원('24. 1. 1. 불변가기준)
- 사업방식 : BTO-a 방식(손익공유형)

-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부득이 사업계획이 조정된 점은 이해되나 해당 민자제안이 연초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속한 사업 조정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노후시설 개선사업만큼은 기한 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실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7억 74백만원 대비 82%인 14억 5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12) ※ 당초) 계측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 ⇒ 변경) 노후설비 개선

- 이는 당초 '24년도 내 설계 및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 설계용역 중간 검토 결과 인프라 구축 범위 등을 조정하는 설계변경과 관계기관 협의, 계약발주를 위한 사전절차(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 계약심사 등) 이행 등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면서 준공기한이 '24.12월에서 '25.4월로 연장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 역시 사전절차,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에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보이는바, 추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장애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전용¹³⁾ (결산서 p.414~415)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1건, 1억 57백만원임.

[표]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전용액	전용률	비 고
2024년도	1,076,528	1	157	0.0146	
2023년도	1,007,442	2	371	0.04	
2022년도	1,034,081	2	16	0.002	

13)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위탁사업비”등 총 1건, 1억 57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감액	증액		
2건				13,404	△157	157		
1	물재생시설과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수선유지비	13,184	△157		2024.9.29	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영역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예산 전용(157,252천원) 필요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20		157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시스템의 완성도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영역의 범위를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및 추가 기능 구현 등의 사유로 확장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것임.

5) 채무부담행위액 (결산서 p.416)

- 해당사항 없음.

6) 계속비결산조서 (결산서 p.416)

- 해당사항 없음.

7) 변경사용¹⁴⁾

- 2024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5건, 20억 7백 만원임.

[표] 최근 3년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24년도	1,076,528	5	2,007	0.19	
2023년도	1,007,442	11	2,107	0.21	
2022년도	1,034,081	9	693	0.07	
2021년도	1,015,340	4	550	0.05	

-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변경은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등 5건, 20억 7백 만원을 변경하였음.

[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사 유
				증액	감액		
11건			52,074	2,007	2,007		
1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재료비	7,084		△1,600	2024.9.27	약품비 중 ‘농축약품 구매(6억)’ 및 ‘제2,3,4처리장 수처리 약품비(10억)’의 집행잔액(예상)을 수선유지비(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로 조정
		시설비	17,446	1,600			
2	인력운영비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191		△2	2024.3.27	성과상여금 부족에 따른 예산조정
		보수	5,011	2			
3	인력운영비 (중량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214		△50	2024.10.21	공무직(무기계약직) 연금부담금의 예상 집행잔액 중 일부를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조정
		공무직 근로자보수	469	50			
4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차 시설 설치	시설비	10,712		△15	2024. 5. 9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감리비 예산이 부족하여 잔여 시설비를 감리비로 조정 사용
		감리비	447	15			
5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1,100		△339	2024.12.12	사각형거 단면확장(보강)공사의 공사비 부족에 따라 감리비 불용액을 시설비로 조정
		시설비	9,400	339			

14)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이 중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은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비용을 당초 140억 69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재료비에서 16억원¹⁵⁾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 '24.1월에서 8월까지의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전년 동월 대비 약 7,500톤이 증가한 것과 건조슬러지의 발전소 판매량이 감소하여 이를 민간위탁 처리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이는 슬러지 발생량에 대한 추계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에 있다고 보이는바 면밀한 조사와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5) (농축약품 구매비 6억원, 제2,3,4처리장 수처리 약품비 10억원)

8) 불용 (결산서 p.370~413)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은 844억 8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9%임.

[표]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예산현액	1,076,528	1,007,442	1,034,081	1,015,340	1,300,827
불용액	84,486	66,951	104,998	108,009	96,549
불용률	7.9	6.6	10.1	11.6	7.4

[표]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4년도(A)	84,486	-	-	15,920	14,186	53,898	482
2023년도(b)	669,51	-	-	1,224	15,539	50,021	167
2022년도	104,998	-	-	11,315	30,472	62,663	548
2021년도	108,009	-	-	21,789 (20.2)	26,449 (24.5)	59,286 (54.9)	485 (0.4)
2020년도	96,549	199 (0.2)	-	18,007 (18.7)	7,404 (7.7)	69,811 (72.3)	1,129 (1.2)
2019년도	104,740	9,727 (9.3)	2,837 (2.7)	34,539 (33.0)	5,734 (5.5)	44,898 (42.9)	7,004 (6.7)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다른 불용액 사유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이 다소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추후 이와 같은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

(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물재생시설 공단 위탁사업비’ 등 42건에 해당됨.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불용액					
				합계 (B)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비율 (B/A *100)
합 계		120,757	99,578	17,513	7,330	4,707	5,475		
1	월곡로 2 성북중앙교회 사각형거 이설	780	218	562	507	55			72.1
2	신촌-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461	886	2,575	2,575				71.6
3	하천토구형 CSOs 간이처리시설 유지관리	130	54	76			76		58.2
4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662	2,831	3,831	3,831				57.5
5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용역비 분담금(하수관로분)	660	342	318			318		48.1
6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30	16	13			13		46.2
7	방배로 474-20일대 사각형거 이설	1,007	590	417	417				41.4
8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원	24	15	9			9		38.9
9	하수관로 수위계 설치	1,549	1,041	472			472		30.4
10	양재대로 116길 16 주변 하수관로 개량	962	671	291		51	240		30.3
11	중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24,092	21,140	2,952		2,164	788		12.3
12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9,091	7,972	1,119		985	134		12.3
13	인력운영비	6,537	5,772	765			765		11.7
14	난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3,548	2,863	686		392	293		19.3
15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7,000	6,231	656			656		9.4
16	남가좌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665	6,305	637			637		7.3
17	기술진단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4,000	1,594	612		612			15.3
18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23,801	23,271	530			530		2.2
19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3,027	12,505	522		448	74		4.0
20	문래-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731	5,261	470			470		8.2

○ 이 중 ‘신촌-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고품질(통수능, 이송능력, 악취저감 등) 관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 신촌-6 소구역은 예산현액 34억 61백만원 대비 71.6%인 25억 75백만원을 불용하였고, 장위-4 소구역은 예산현액 66억 62백만원 대비 57.5%인 38억 31백만원을 불용함.

- 먼저, 신촌-6 소구역의 경우 사업구간 내 지장물(상수관 등) 저축, 도로굴착 통제구간 및 사유지 내 개인배수설비 구간 등(아래 [그림] 참조)을 사업구간에서 제외하면서 공사물량이 아래의 [표]와 같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표] 신촌-6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소 물량 내역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하수관거 정비	전체굴착	D300mm~D1000mm	m	1,810	1,262	감) 548
	비굴착	D600mm	m	-	127	증) 127
원형맨홀	조립식 PC	1호~3호	개소	85	46	감) 39
빗물받이		1호~2호	개소	5	39	증) 34
횡단하수구		(300~500kg미만), 무소음	본	10	3	감) 7

-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계획과 범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불용을 예방토록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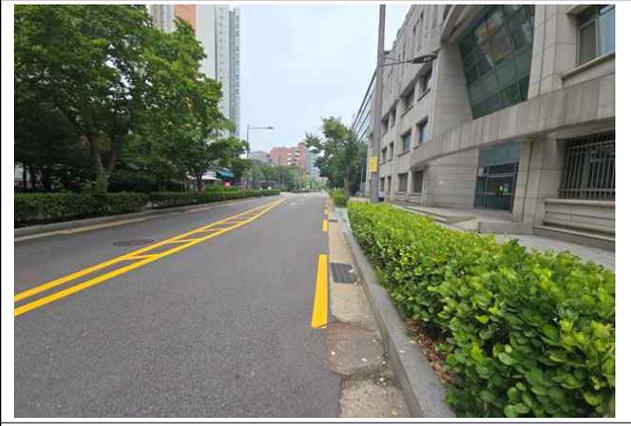


보도구간 지장물 저축



사유지내 개인배수설비

건축물 담장 저축



아스팔트 굴착 통제기간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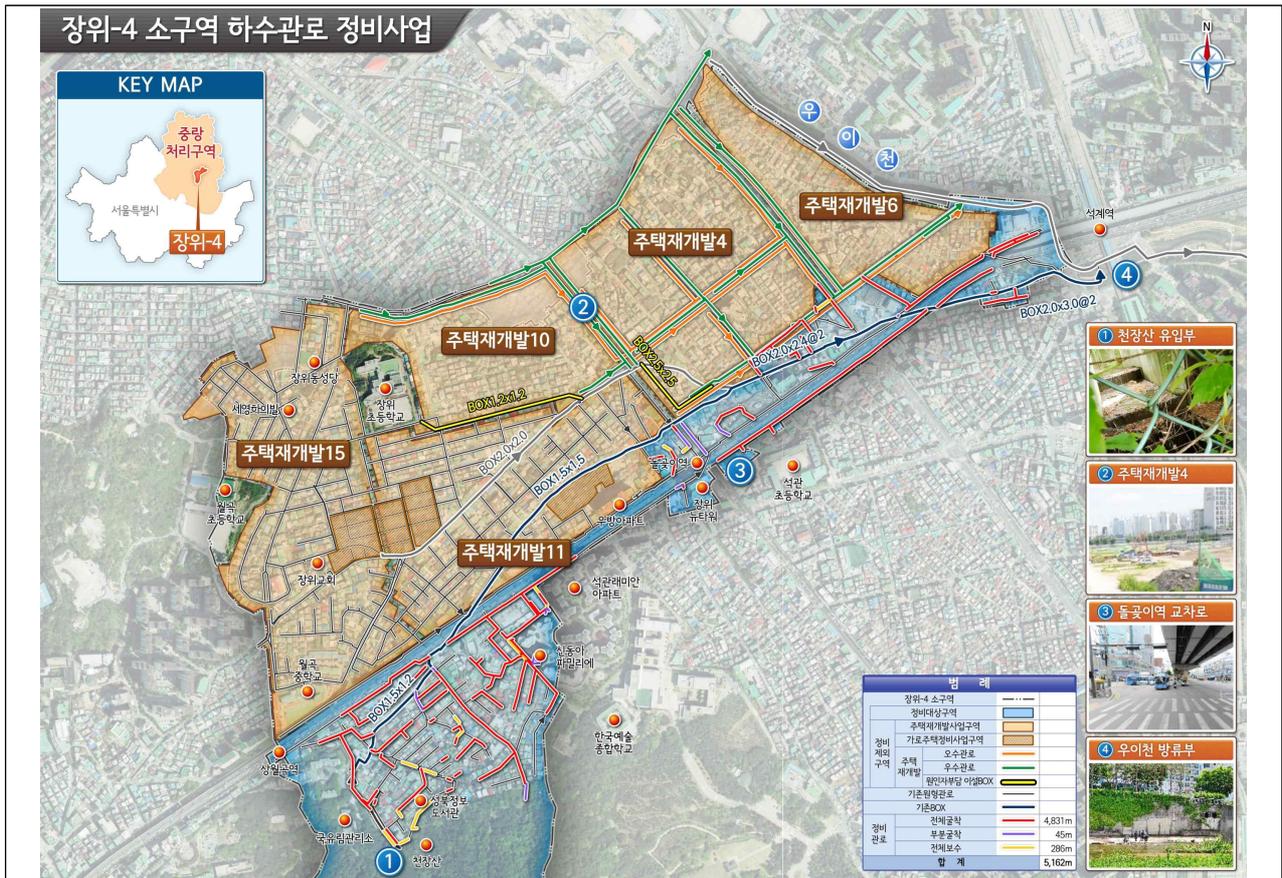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저축

[그림] 사업구역 내 지장물 등 저축 현황

- 다음으로, 장위-4 소구역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20.5월~'22.2월) 당시 미확정되었던 사업구역 내 장위4주택재개발사업¹⁶⁾과 장위6주택재개발사업이 '23년도에서 '24년도 사이

16)

확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을 공사 시 제외하였고, 이에 이전비 (굴착복구비, 이설공사비 등) 감소 등 공사물량 변동에 따른 지출잔액 불용이 발생한 것이나,



[그림]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도

[표] 장위4, 6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분	장위4주택재개발사업	장위6주택재개발사업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면적 :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 153,501㎡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사업시행자 : 장위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원, 조합원 900명) ○ 건축계획 : 지하3/지상31층, 세대수 2,840(임대 484), 용적률 259.51%, 건폐율 17.52%, 비례율 10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105,136.9㎡) ○ 시행자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찬웅) ※조합원563명 ○ 건축계획 : 지하3/지상33층, 15개동 1,637세대(임대 2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263.97%, 건폐율 19.52%, 비례율 100.05% ○ 공사 : 대우건설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02.26. : 조합설립인가 ○ 2013.06.19. : 사업시행인가 ○ 2017.02.24. : 관리처분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06.24. : 조합설립인가 ○ 2013.04.04. : 촉진계획변경(용적률 20%상향) ○ 2014.07.24. : 촉진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0.23.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2024.02.16. : 조합설립변경인가 ○ 2025.02.24. :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05.01. : 사업시행인가 ○ 2020.07.08.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3.03.31.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 2023.08.11. : 사업시행(변경)인가 ○ 2024.05.03.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비 계획도		

- 사업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이 각각 '09년, '10년도,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각각 '13년도, '15년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을 계획할 때는 주변 민간개발 현장의 유무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9) 재정건전성 관련 (결산서 p.107~122)

- 2024년말 기준 자산은 7조 307억 39백만원, 부채는 86억 91백만원으로 순자산(자본)은 7조 220억 48백만원임.
- 2024년도말 기준 부채는 86억 91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0.1% 수준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24년도	7,030,739	8,691	7,022,048	1,055,923	1,121,536	△65,613
2023년도	7,091,994	10,175	7,081,820	1,010,283	1,056,310	△46,027
2022년도	7,082,670	3,790	7,078,879	1,018,497	1,017,733	763
2021년도	7,034,397	7,437	7,026,960	937,880	912,018	25,863
2020년도	6,948,499	5,870	6,942,629	939,949	921,350	18,599
증 감	82,240	2,821	79,419	115,974	200,186	△84,212

<최근 5년간 자본 및 부채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자 본(A)	7,022,048	7,081,820	7,078,879	7,026,960	6,942,629
부 채(B)	8,691	10,175	3,790	7,437	5,870
비율(B/A)	0.1	0.1	0.1	0.1	0.1

- 2024년도말 기준 채무는 없음.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23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10,175	8,148	9,632	-	8,691
채 무	-	-	-	-	-

- 한편, 공급원가는 톤당 1,257.84원, 공급단가(요금)는 톤당 690.19원으로 요금현실화율¹⁷⁾은 54.87%임. (결산서 p.)

<하수도요금의 톤당 원가 및 비율>

(단위: 원,%)

구분	계	인건비	동력비	약품 재료비	수선 교체비	경상·민간 이전	감 가 상각비	차입금 이자비용	자기자본 비용	기타 경비
2024	1,257.84 (100.0%)	57.75 (4.59%)	45.47 (3.61%)	11.06 (0.88%)	342.33 (27.22%)	229.24 (18.22%)	333.61 (26.52%)	0 (0%)	296.16 (23.55%)	△57.78 (△4.59%)
2023	1,246.27 (100.0%)	47.08 (3.8%)	47.45 (3.8%)	16.18 (1.3%)	347.78 (27.9%)	175.62 (14.1%)	343.54 (27.6%)	0 (0%)	306.26 (24.6%)	△37.64 (△3%)
2022	1,213.52 (100.0%)	48.13 (4.0%)	30.07 (2.5%)	11.71 (1.0%)	383.54 (31.6%)	120.11 (9.9%)	324.71 (26.7%)	0 (0%)	308.11 (25.4%)	△12.85 (△1.1%)
2021	1,101.88 (100.0%)	50.22 (4.6%)	32.40 (2.9%)	9.78 (0.9%)	320.34 (29.1%)	141.51 (12.8%)	285.61 (25.9%)	0 (0%)	304.72 (27.7%)	△42.69 (△3.9%)
2020	1,079.29 (100.0%)	53.26 (4.9%)	52.89 (4.9%)	8.11 (0.8%)	315.97 (29.3%)	126.88 (11.8%)	273.29 (25.3%)	0 (0%)	291.28 (27.0%)	△42.39 (△3.9%)
증 감	236.86	△2.51	△3.67	7.17	30.85	95.91	73.4	△0.01	31.06	4.66

- 현재 공급단가(요금)는 m³당 690.19원이나 m³당 공급원가는 1,257.84원으로 약 82.24%의 요금인상요인¹⁸⁾이 있음.

<공급원가·공급단가 및 요금현실화율 변동 현황>

(단위: 원/m³)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공급원가	1,257.84	1,246.27	1,213.52	1,101.88	1,079.29
공급단가	690.19	693.03	644.74	628.88	643.02
요금현실화율(%)	54.87	55.61	53.13	57.03	59.58
요금인상요인	82.24	79.83	88.22	75.35	67.85

<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요금 비교 (2024년 기준)>

사용량 구분(m ³)	요금(원/m ³)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30이하	480	400	17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17) 요금현실화율(%) = [요금단가(원/m³) / 요금원가(원/m³)] x 100

18)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 - 사용료수익) / 사용료수익] x 100

- 지난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출범 이후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있었던 2018~2019년도에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현실화율이 67.3%까지 증가하였던 것이,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이후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감소하면서 2024회계연도 기준 54.87%까지 낮아졌고, 2023회계연도에 이어 2024회계연도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도 계속된 투자와 수선보수가 요구되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총괄원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이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붙임] 참조)'를 살펴보면,
 -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54.87%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2.24%의 효율인상 요인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붙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부 감사보고서 39p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붙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부 감사보고서 39p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

1.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① 서울특별시하수도의 평균사용요금 및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 요	금 액 (천원)	조 정 량 (톤)	톤 당 금 액
하수도사용료 수익	742,170,292	1,075,306,570	690.19
총괄원가	1,352,560,791	1,075,306,570	1,257.84
조정량 1톤당 손실			567.65

②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54.87%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2.24%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단체별 요금현황(2023년말 현재)

단 체	m ² 당 요금 (원/m ²)	m ² 당 원가 (원/m ²)	현실화율(%)
전 국	672.63	1,440.77	46.69
특광역시	681.34	1,066.36	63.89
대전광역시	610.99	719.05	84.97
부산광역시	643.02	1,014.34	63.39
대구광역시	621.19	761.54	81.57
인천광역시	682.56	852.57	80.06
광주광역시	595.99	907.85	65.65
울산광역시	888.59	1,099.88	80.79
세종특별자치시	852.84	2,803.69	30.42
서울특별시('23)	693.03	1,246.27	55.61
서울특별시('24)	690.19	1,257.84	54.87

※ 전국과 타시군의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